

1976學年度 碩士學位 請求論文

警察에 대한 濟州道民의 意識構造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閔 丙 禎 博士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玄 商 鍾

1976學年度 碩士學位 請求論文

警察에 대한 濟州道民의 意識構造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閔 丙 旽 博士

主 審 _____

副 審 _____

副 審 _____

審査年月日 197 年 月 日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玄 商 鍾

目 次

第 1 章	序 論	5
第 1 節	研究의 目的	5
第 2 節	調査研究의 範圍와 方法	7
第 2 章	調査에 關聯된 狀況	10
第 1 節	警察의 機能	10
第 2 節	濟州道民의 一般的 意識構造	10
第 3 節	濟州警察의 特殊性	28
第 3 章	調査結果 分析	34
第 1 節	理 解 度	34
第 2 節	信 賴 度	56
第 3 節	親近度 및 協助度	74
第 4 章	問題点 및 改善方向	93
第 1 節	問 題 点	93
第 2 節	改 善 方 向	99
第 5 章	結 論	103
	参 考 文 献	105
	英 文 抄 録	107
	調 査 質 問 紙	111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警察官은 하루 18 時間以上을 國民의 生命, 財産을 保護하고 社會 安寧秩序를 維持하는 國家와 國民을 위해서 매우 重要한 일을 하는데도 國民들로 부터 敬遠視 당하고 있는것이 現實이다.

우리나라 國立警察이 創立된지도 30 余年이 지났으니 警察行政도 이제 國民들로 부터 敬遠視 당할것이 아니라 國民의 羨望의 對象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 國民들로 부터 積極의 呼應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만 警察 本然의 任務가 完遂되리라 본다.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住民들이 警察를 理解하고 信賴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앞서 住民들이 警察을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가를 正確히 把握하는 것이 急先務라 생각한다.¹⁾

行政의 目標가²⁾ 民主性, 能率性, 合法性 뿐만 아니라 나아가 社會的 衡平에서 求한다면, 行政은 能率為主, 組織內部 爲主의 內部 志向의인 것에서 벗어나, 目標達成, 規範性 또는 目的性을 強調하는

註 1) 李奎燮 『韓國警察官에 관한 行態學的 研究』, 서울大 行政大學院 碩士論文, 1966. p.13.

2) 申宗淳 "行政의 目標에 關한 研究", 東大 行政論集(第 6 集), 1975. p.7 ~ 21.

外部志向의인 것으로서 實質的인 社會의 問題를 把握하고 解決하는 問題 志向的인 것에 重點을 두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警察行政의 方向도 社會現實을 直視하고 問題點을 把握 解決하여 나아가는 힘을 길러야 할때에 이르렀다고 본다. 따라서 住民들이 警察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問題, 더 나아가서 警察을 不信하고 敬遠視하는 風潮를 正確히 把握하고 이런 問題의 所在을 正確히 파악 是正하여 나가지 않으면 警察行政의 發展은 기하기 힘들다고 본다. 나아가서 住民들로 부터 警察에 대한 尊敬과 信賴, 그리고 支持와 協力을 獲得하지 않는 限 警察行政의 目標達成은 不可能하기 때문에 이러한 問題解決은 더욱더 重要한 課題라고 생각된다.³⁾

警察의 目的은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고 社會安寧秩序를 維持하는 것인바,⁴⁾ 이를 遂行하기 위해서는 最少限의 對民統制 活動을 하게 되기 때문에 『住民들의 抵抗』을 받게 되어 相互間의 好意的 態度確保는 그리 容易하지 않다. 또한 警察目的을 效果的으로 達成하기 위해서는 『警察과 住民의 態度가 相互 友好的이어야』하기⁵⁾ 때문에 住民들의 警察에 對한 認識을 把握하는 問題는 警察行政 發展을 위하여 가장 重要한 事案이라고 본다.

註 3) 朴東緒 『韓國行政論』 서울: 法文社, 1974. p.72 ~ 77.

4) 警察公務員法 (法律 第2077号 1969. 1. 7), 第2條 1項
警察官은 國民의 生命, 身體 및 財産의 保護와 犯罪의 豫防과 鎮壓 및 搜查와 交通의 團束 消防 其他 公共의 安寧과 秩序 維持를 그 職務로 한다.

5) 徐基榮 “警察官의 職業的 人格에 관한 研究”,
東大 行政論集 (第5集) 1974. p.99.

그런 뜻에서 本 論文은 濟州道民을 事例로 하여 警察에 대한 住民의 意識構造를 調査하므로서 住民과 警察를 서로 密着시키는 方案을 研究할 資料를 提供하고 問題되는 點은 導出하여 그 改善 方案을 모색하려는데 目的을 두고 쓰여졌다.

第 2 節 調査研究의 範圍와 方法

本 論文에서는 文献에 依한 考察과 質問紙에 依한 調査를 併行 하여 實施하였다. 第 2 章 『調査와 關聯된 狀況』은 主로 文献에 依한 考察로서 지금까지 여러 學者들에 依하여 論及되었던 事項들을 綜合해서 歴史的 側面, 地域的, 社会的 側面에서 檢討 說明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論點의 提示나 學說을 創案하지는 못하였고 오직 問題의 所在를 把握하는데 그쳤다.

한편 警察에 대한 濟州道民의 意識構造를 調査하는 方法으로 質問紙에 依한 調査方法을¹⁾ 採하였는데 談問은 教育界, 言論界, 敎職界 事業界等 社会各層에 있는 人事들에게 警察에 대한 一般的인 認識과 기대 및 나아가서 改善點들을 把握하여 이를 土台로 總 25 個의 說問을 만들었고, 이를 濟州市를 中心으로한 住民을 對象으로 年令, 職業, 學歷을 考慮하여 調査하였다.²⁾

註 1) 李奎燮 『韓國警察官에 관한 行態學的 研究』, 서울大 行政大学院 碩士論文, 1966. p. 13

2) 申宗淳 『行政의 目標에 관한 研究』, 東大 行政論集(第 6 集) 1975. p.7 - 21.

調査方法으로는 1976年 10月2일부터 警察官과 關連이 가장 많은 運転士会, 古物商聯合会 事務員을 通하여 會員들에게 120枚, 道庁 및 教育庁 傘下 公務員 등에게 70枚, 나머지는 濟州市内 一中, 濟州女中 2学年 學生들에게 부탁하여 學父兄들에게 400余枚 總 590枚를 配付하여 10月12日까지 總 528枚를 회수하였다.

1. 먼저 地域的으로 濟州市를 中心으로한 隣接面인 朝天面과 涯月面이 약간 包含되었는데, 濟州市를 揀한 理由는 社会構造上 여러가지 種類의 職業을 가진 者가 많고, 또한 他地域에 比하여 警察官과의 關聯이 많은 地域이기 때문이다.

2. 調査対象者 總 528名中 年令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 代	30 代	40 代	50 代	計
115名(22%)	52名(10%)	262名(49%)	99名(19%)	528名

年令階層의 特徵을 보면

50代以上(19%)은 濟州道の 4.3 暴動事件과 日帝彈圧時代の 警察을 보았던 階層이고, 40代(49%)는 日帝時代の 警察은 幼年 期에 겪었고, 4.3 暴動事件을 青年期에 겪은바 있는 警察官에 대한 체험이 가장 많은 階層이며, 20.30代(32%)는 特殊한 体験은 없으나, 젊은 青年으로서 警察에 대한 예리한 批評의 素地를 지니고 있는 階層이다.

3. 知識의 程度에 따라 對警察 認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學歷의 高低를 골고루 扱하려고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國卒以下가 몇명 (21%) 안되는 아쉬움이 있다.

無 學	國 卒	中 高 卒	大 卒 以 上	計
14 名 (3%)	94 名 (18%)	295 名 (55%)	125 名 (24%)	528 名

4. 職業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農 業	水 産 業	商 業	公務員, 会社員	計
171 名 (32%)	27 名 (5%)	173 名 (33%)	157 名 (30%)	528 名

警察官과 聯繫關係가 比較的 먼 農水産業에 從事하는 사람들과 (37%), 古物商, 各種 接客業所等 直接的인 警察対象業者들을 中心으로 하는 各種 商業에 從事하는 사람들 (33%) 과 公務員, 会社員等 社会活動을 많이 하고 있는 俸給生活者 (30%) 들이 골고루 包含 되었다.

한편 調査內容은 附錄 質問紙에서 보듯이 總 28 問에 이르는 警察에 대한 理解度, 信賴度, 親近度 및 協助度等으로 이루어 졌다. 그리고 회수한 調査表 528 枚 全部를 가지고 計算機에 依해 結果를 分析 處理하였다.

第 2 章 調査에 關聯된 狀況

第 1 節 警察의 機能

警察이란 무엇을 意味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나 하는 問題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檢討 研究되어 그 意味가 多様な 바, 優先 概念의 發展過程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警察의 概念¹⁾

古代의 警察(police, polizei)은 憲法 或은 秩序있는 共同 社会로 意味됐다.

그後 中世, 獨逸에 있어서는 封建領主의 統治權과 結付되어 公共의 秩序와 福利를 위한 特別한 統治權으로서의 警察權이 認定되었다.

그뒤 15. 16 世紀頃에 와서는 警察이라는 말은 敎會行政의 根限을 除外한 一切의 國家의 行政을 意味하게 되어 警察은 世俗的인 社会生活의 秩序를 公權力에 依하여 維持되는 作用으로 規定되었다.

그리고 17 世紀부터는 國家作用이 擴大되므로서 司法, 軍事, 外交, 財政等を 除外한 全行政 즉 오늘날의 內務行政(治安作用과 福利作用을 합한것)에 該當하는 것으로 縮少되어 警察은 保安警察(Sicherheits polizei)과, 福利警察(Wohlfahrts polizei)로서 成立했다.

注 1) 金道稔 『行政法論』 서울, 博英社, 1964. p. 573.

18世紀 中葉 啓蒙期를 거쳐 自然法的 自由主義思想의 影響을 받아 警察權의 發動은 消極的인 公安維持에 限定되게 되었는데 1794年의 프로이센 一般法²⁾, 1795年의 프랑스 輕犯罪處罰 法典에³⁾ 實定化한 同警察概念이 現在 우리에게 傳承되어 있는 것이다.

20世紀에 들어와서 警察이란 社會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一般 統治權에 기하여 國民에게 命令, 強制로 그 自然的 自由를 制限하는 作用으로 보았다. 즉 秩序를 위한 行政作用이라 말할 수 있다.

2. 警察의 目的⁴⁾

警察의 目的을 實定法에서 檢討하여 보면 『公共의 安全과 秩序維持』 (警察公務員法 第1條 1項) 『公安의 維持』, (警察官 職務執行法 第1條 1項) 『危害發生의 防止』 (同法 第4條) 등으로 表現되고 있다. 이를 分說하면 다음과 같다.⁵⁾

註2) 同法 第二部, 第17章, 第10條『公共의 平穩, 安全, 秩序를 維持하고 公共 또는 個人에게 發生하는 危害를 除去하는 任에 當하는 것이 警察이다』

3) 同法 第16條『警察은 公共의 秩序, 自由, 財産, 個人的 安全을 維持함을 그 任務로 한다』

4) 金道昶 前掲書, p.582.

5) 柳興洙『警察法論』 서울 正林社, 1971. p.34.

① 公共의 安全⁵⁾

公共의 安全이라 함은 社会生活이 秩序維持에 不可欠한 前提라고 생각되는 法秩序가 違法인 侵害로 부터 保障될 것을 意味한다. 다만 基本的 人權을 最大로 尊重 保障하는 民主主義의 憲法에 있어서는 國家가 또는 그 機關의 存在 또는 그 正常的인 運營에 關한 法秩序의 維持는 原則으로 公共의 安全에 包含되지 않는다고 解釋되고 例外로 그 侵害가 犯罪을 構成하는 境遇에 對하여 一般社会와 個人을 保護하는 것이 警察의 責務에 屬한다고 하는데 不過하다.

또 法令에 依하여 警察 以外の 他 機關의 權限에 屬한 事項이 警察의 責任 範圍에서 除外되는바 이를 警察의 補充性的 原理라고 한다. 즉 民事法 秩序, 刑事法 秩序의 維持는 法院의 權限에 屬하고 當然히 公共의 安全에 包含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같은 여러 가지 制約下에서 公共의 安全이란 個人의 生命, 身體, 自由 或은 名譽나 財産에 對하여 가하여지는 損害로 부터 社会一般과 個人을 保護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註 5) 警察公務員法 (法律 第 2077 号, 1969.1.7), 第 2 条 1 項
『警察官은 國民의 生命, 身體 및 財産의 保護와 犯罪의 豫防과 鎮壓 및 投査와 交通의 團束, 消防 其他 公共의 安寧과 秩序 維持를』

(2) 公共의 秩序⁶⁾

公共의 秩序라 함은 現行法規範의 範圍를 넘어서 社會的 通念 즉, 良識에 따라 發展的인 社會生活에 不可欠한 前提로 秩序規範을 意味한다. 이는 時間과 場所에 따라 良識에 의하여 許容되는 것이므로 行爲의 內容은 반드시 一定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私法에 있어서 法律上 明白히 規定된 個人의 權利와 義務가 公序良俗, 信義誠實等の 概念에 의하여 擴大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公共의 秩序라는 概念에 의하여 警察權과 그 상대방의 警察義務가 顯著하게 擴大되는 境遇도 있게 되는 것이다.

(3) 危險의 防止⁷⁾

公共의 安全과 秩序의 維持란 社會生活에 必要한 法規範 其他의 秩序規範에 侵害되지 않도록 保護하는 것이기 때문에 人爲的 또는 社會的, 自然的 危險의 防止에 關한 것이고, 또 危險의 防止란 公衆 또는 個人에 關한 것이기 때문에 個人을 危險으로부터 保護하는 것은 그것이 公共의 利益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定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危險이란 곧 公共의 安全과

註 6) 警察官職務執行法(法律 第 298 号, 1953. 12. 14)

第 1 条 『警察官이 國民의 生命, 身體, 財産의 保護와 犯罪의 豫防, 公安의 維持 其他』

註 7) 同法 第 4 条 『警察官은 人命 또는 身體에 危害를 미치거나 또는 財産에 重大한 損害를 끼칠 憂慮가 있는……危險한 事態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措置를 取할 수 있다』

秩序의 妨害를 意味한다. 이 危險은 具體的 現實的인 것이어야 하고 또 이미 發生한 危險에 對하여서는 이를 鎮壓하고, 切迫한 危險은 이를 豫防하여야 할 것이다.

3. 警察의 手段⁸⁾

警察作用은 權力으로서 國民에게 命令 強制하고 그러므로서 그 自由를 拘束하며 必要한 境遇에는 實力으로서 이를 強制하는 作用이다.

公企業의 經營 또는 公物의 管理가 主로 積極的인 福利增進을 爲한 非權力的인 作用인 것과 對照的이다.

警察作用은 他國家作用에 比하여 가지는 特色의 하나는 그 手段이 命令 強制에 依하는 實力的이라는데 있다.

(1) 自然的 自由의 制約

警察權에 依한 命令 強制는 法規의 規定에 의하여 直接 警察義務가 發生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法規에 根拠한 行政作用이지만 그 特色은 自然的 自由의 制約인 點에 있다.

自然的 自由라함은 法律上의 能力에 대한 觀念이며 法律上 각인의 天然의 自由에 방임되어 있는 範圍內에서 各人이 自由意思에 따라 行動하는 自由를 意味한다. 따라서 殺人이나 竊盜는 特別한 規定이나 또는 警察權에 의한 命令에 의하지 않고서는 刑事作用에 의한 科刑과 그 執行으로서 족하다.

註 8) 崔在東 『警察法』 서울 政文出版社, 1974. p.34.

즉 刑事罰의 前提인 一定한 行爲 또는 不作為는 그 自体로서 反社会的인 行爲이고 따라서 自然的인 自由에 屬하지 아니하지만 警察權에 의하여 禁止된 特定한 行爲는 그 禁止가 없었더라면 違法이 아닌 어디까지나 自然的 自由에 속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警察權은 法規 또는 處分에 의하여 自然的 自由를 制限乃至 拘束하는 점에서 刑罰權과 區別된다.

自然的 自由를 制限하는 手段인 命令이라함은 法規 또는 行政處分에 의하여 國民에게 作為 또는 不作為, 受忍, 給付等の 義務를 命하는 行爲와 이미 命하여진 義務를 解除하여 경우를 總稱하며 強制란 個人의 身體, 財産, 家宅等에 대하여 實力으로서 事實上の 必要한 狀態를 實現하는 行爲를 意味한다.

(2) 警察下命

警察의 手段으로서의 警察下命이란 作為, 不作為, 給付 또는 受忍의 義務를 賦課함으로써 自然的 自由를 拘束하거나 或은 一般的으로 賦課한 義務를 特定한 境遇에 免除하는 境遇이다. 그것은 自然的 自由에 속하지 않은 特別한 實定法上の 權利, 權利能力, 行爲能力 또는 包括的인 法律關係를 設定하거나 또는 이를 剝奪하는 形成的 行爲와 區別하지 않으면 안된다. 義務를 賦課하는 作用은 直接的으로 法令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境遇가 있으나, 義務의 免除는 個別的인 措置인 까닭에 行政處分에 의한것을 原則으로 한다.

(3) 警察強制

警察의 手段으로서의 警察強制란 實力을 使用하여 事實上の

個人的自由를 制限하고 警察目的에 適合한 狀態를 實現하는 作用이기 때문에 언제나 法律을 根拠로하는 行政作用으로서 이루어진다.

또한 警察權에 의한 實力의 行使가 適法하게 行하여 지기 위해서는 相對方인 國民이 이를 受忍할 義務가 있음을 前提로 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法律에 의하여 受忍義務가 附加되는 境遇가 아니면 안된다.

4. 警察業務의 內容

以上에서 警察이란 무엇이며, 또한 警察의 目的과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實質적으로 警察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이러한 問題는 여러 가지 側面에서 檢討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最下位 警察執行機關인 一線警察署에서 取扱하는 業務中 秘密에 屬하지 않은 事項으로서 一般住民과의 關係에서 遂行되는 業務만을 살펴 보기로 한다.⁹⁾

- 靑少年 保護 嚮導 業務
- 家出人 및 迷兇保護 手配
- 公演場 団束 指導
- 拾得物, 遺失物, 埋藏物 處理

註 9) 警察署組織規則(濟州道 規則 第557号, 1976. 7. 19)
第4条 事務의 分掌

- 射律行為 団束 指導
- 倫落女性 団束 指導
- 遊技場 団束 指導
- 広告物 許可 및 団束 指導
- 風俗接客業所 団束 指導
- 銃砲火藥類 団束 指導
- 마약중독자 및 精神病者 保護
- 古物商，典當舖 許可 및 団束
- 印章業 団束 指導
- 射擊場 団束 指導
- 交通法規 違反者 指導 団束
- 交通事故 調查處理
- 交通安全 施設 管理
- 運転免許 行政処分 및 執行
- 運転士 教養
- 防犯에 關한 業務
- 各種 安全事故 및 危害 防止
- 遊船場 団束
- 戸口調査
- 混雑警備 (各種 行事場 警備)
- 多衆 犯罪 鎮壓
- 警護警備

- 海岸警備
- 民防衛業務 協助
- 防衛召集兵 人事管理 및 教育 實施
- 豫備軍 業務
- 豫備軍 武器彈藥 管理
- 重要施設 警備 指導 監督
- 請願警察 監督 및 教育
- 留置場 管理
- 罰科金 徵収 業務
- 犯罪事件 處理
- 各種 犯罪搜查 및 檢舉
- 虞犯者 觀察 保護
- 贓物 手配 및 品票管理
- 諸令狀 執行
- 身元調査
- 住民登録에 關한 業務
- 海外僑胞 實態把握 및 善導
- 外國人 動態把握

第2節 濟州道民의 一般的 意識構造

濟州道民의 意識構造 乃至 道民性에 대해서는 그간 몇개의 見解들의 發表되어 있다.¹⁾ 그것들은 모두 다른 側面에서 觀察하고 分析을 試圖한 것들이지만, 綜合하면 道民의 意識을 肯定的인 視点에서 抽出하려는 것과, 否定的인 視点에서 規定하려는 것으로 要約된다. 이 兩視点에서의 規定들은 各各 다른 말로 表現되어 있지만, 대개 共通点이 發見된다. 其中 重要한것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肯定的인 面

- (1) 勤勉, 儉素하고 貯蓄心이 强하다.
- (2) 自主, 自立精神이 强하다.
- (3) 平和的이고 協同的이다.
- (4) 義理에 밝고 進取的이다.
- (5) 誠實하고 忍耐力이 强하다.

2. 否定的인 面

- (1) 功利精神이 强해서 個人主義 乃至 利己主義的이다.
- (2) 劣等意識이 많고 排他性이 두드러 진다.

註1) 金奉玉 “濟州人을 말한다 — 强靱하고 健實한 島民精神”,
開發濟州(創刊号), 濟州 1975. p.28 ~ 31.

玄容駿 “濟州人을 말한다 — 奢侈, 放縱하기 쉬운 素地”
前書, p.32 ~ 36.

金榮敦 『濟州道民謡의 特色』, 濟大 國語國文學研究室,
1964. p.25 ~ 50.

韓致文 “本道民의 特質” 『耽羅實錄』韓進文化社, 1973. p.292-297

③ 思考와 行動에 스케일이 좁고 事大的 心性이 짙다.

대충 위와 같은 것인바, 이들 各項은 보는 角度에 따라 모두 理를 지니고 있고, 妥當한 것일 수 있다. 本 研究에서는 道民 意識構造의 全般的인 問題를 檢討 追究할 餘裕도 없고 또 그 必要도 없기 때문에 이들 各項은 그대로 받아드리기로 한다. 而면서 本 研究에 直接的으로 關聯되는 道民의 意識構造 즉, 警 乃至 官吏에 대한 道民意識의 特徵에 焦點을 두어 이를 追求 보기로 한다.

、歷史的 側面

歷史的 側面에서 對官吏(警察) 意識의 形成을 追求하는 데는 가지 方法으로 보아나가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하나는 濟州道의 形成過程에서 그 構成種族 乃至 移住民들의 成分的 性格에서 方法이요, 둘은 行政의 歷史的 展開過程에서 累積되어 體質化 된 道民의 意識을 分析하는 方法이다.

첫째, 道民의 形成過程의 問題부터 살펴 나가기로 한다.

濟州島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 했는지 正確한 年代는 알 없으나, 三姓神話로 伝해 오는 高, 良, 夫 三姓氏族이 原住民이 음엔 異論이 없다.²⁾ 이들 三氏族은 部族國家를 이루어 耽羅를

2) 李元鎮 『耽羅誌』 淡水契編 『增補 耽羅誌』 『高麗史』 등 文獻엔 最初 人物이 살지 않을때 毛興穴(現 三姓穴)에서 良, 高, 夫 三神人이 湧出하여 開拓했다고 되어 있고, 金泰能 『濟州島略史』 및 『濟州年鑑』 1969, p.137-141, 『三姓人 以前에 州胡人이 살고 있었으나 火山爆發로 인해 埋沒되어 버리고 後에 入住한 三姓人이 事實上 原住民이 되었을것』

建国하고 星主, 王子의 称号를 李朝初 太宗 2 年까지 維持하며 權力의 꼬리를 이어 왔다. 이 耽羅는 新羅, 百濟, 高麗로 本土의 政權이 바뀔때마다 朝貢을 하며 屬國이 되었고, 그래서 相互間 사람과 文化의 交流를 해 왔다.³⁾ 百濟가 亡할때 高麗가 亡할때등, 政權이 바뀔때마다 肅淸 対象인 一部 政客들이 濟州로 避해 와서 定住한 史實을 필두로 해서 李朝時代의 많은 移住民의 殺到는 文化 伝播面에 뿐 아니라, 濟州道民의 形成에 새로운 轉機를 마련했다. 이제까지 高, 良, 夫 三氏族이 独占하고 있던 섬에 本土 移住民이 새로운 第二의 主人公으로 登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⁴⁾

여기에 重要한 것은 이들 移住民의 成分과 性格들이다. 그들은 百濟 滅亡時의 政客들이나 高麗 滅亡時의 杜門洞 72 賢의 眷屬들은 勿論, 李朝時代의 移住民들도 士禍, 党爭, 叛亂등을 契機로 流配 또는 좌천되어온 사람들이다.⁵⁾ 이들은 한결 같이 剛直한 性品の 所有者로 憂國精神이 透徹하고 政治의 正道를 希求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當時 政權의 미움과 등살에 견디지 못하며 쫓겨온 것이다. 濟州島가 流配의 섬이요, 京都에서 가장 멀리 있는 버려진 섬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쫓겨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서 余生을 보내고 子孫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註 3) 李元鎮 『耽羅誌』, 金泰能 『濟州島略史』, p.142 ~ 160
金宗業 “濟州道沿革”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 綜合調査報告』 p.30 ~ 47.

4) 金奉玉, 前掲論文 p. 28 ~ 29.

5) 前掲論文 및 金泰能 前掲論文 中, 第 4 節 學問과 文化發展의 經緯

다. 이러한 그들의 内心에는 政府 乃至 官에 對한 不信感 乃至 反抗心이 强하게 潛在되고 있었을 것은 推測하기 어렵지 않고 또한 그들의 子孫들에게도 不知不識間에 그러한 意識이 繼承되었으리라는 點도 理解가 갈 수 있다. 오늘날 道民의 殆半이 이러한 人物의 後孫들이라는 點은 警察 乃至 官에 對한 道民의 意識의 底邊에 敬遠視 乃至는 不信感, 나아가서는 反抗의 心性이 흐르고 있으리라는 假設을 成立케 한다.

둘째, 道民에 對한 行政의 史的 展開過程에서 볼때 위의 假設은 事實이라는 心証을 얻게 한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濟州로 보내라』는 俗談과 같이 濟州에는 말이나 기를 곳ियो, 사람이 살곳은 못된다고 여겨져온 섬이다. 그만큼 濟州는 行政的으로 버림받은 곳이었다.

上古以來 耽羅라는 部族國家는 高麗, 肅宗 10年(1105年)에 終末을 告하고 耽羅郡이라 改稱하여 高麗의 統治下에 들어갔으나⁶⁾ 行政의 힘은 이 섬의 구석까지 제대로 미치지 못하였고, 또 政府 自体로서도 버려버린 地域으로 取扱해온것이 事實이다. 그것은 高麗 元宗 14年 以後 約 1世紀間 濟州를 元의 支配下에 들어가게 하고 島民을 元의 牧馬官吏들의 말발굽 밑에 呻吟케 했던 事實이나 그 以後 李朝 末葉까지 이 섬을 流配地로나 利用했던 處事만 보아도 가히 알 수 있는 事實이다.⁷⁾

註 6) 金泰能, 前揭論文, p.149.

7) 前揭論文, p.150 ~ 157.

1世紀間, 元은 濟州를 占領하여 牧馬場으로 活用, 日本侵略의 準備를 갖추었다. 이러한 外勢壓迫下의 島民의 可로운 賦役生活은 想像하기조차 힘든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高麗 공민왕 16년에 濟州는 高麗에 反還되었지만 李朝初부터 激甚해진 倭寇의 侵入은 또한 濟州島民들을 極度로 괴롭혔다. 島民들은 섬주위를 돌아가며 烽火候望台를 設置하고 自体防禦의 賦役에 나날을 보내고, 生活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거기에서 凶年과 疾病은 끊임없이 찾아들어 生活의 말이 아니었다.⁸⁾ 이런 狀況속에서도 高麗때는 15才以上 男子면 누구나 貢 15斗씩을 牧使에 대한 歲貢으로 바쳐야 했다. 그뿐 아니라 星主, 王子에 대해서도 進納과 各種 賦役이 있었으며 高麗王에게도 의례적으로 特産物을 進上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進上은 李朝時代에도 여전히 있었고, 官吏들은 暴政을 하여 苛斂錄求로서 島民들을 搾取하고 괴롭힌 事例가 적지 않았다.⁹⁾

이러한 行政的인 버림과 暴政下에서 가뜰이나 政府의 不대접을 받고 移民해 온 人物의 後孫인 道民이 官에 대해 親密과 敬慕의 情을 갖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런 데서 高麗 의종 22年の 良守의 亂을 비롯하여 明宗 16年, 神宗 5年, 元宗 8年 등에 各 民亂이 일어났고, 李朝에 들어서도 宣祖 34年の 吉雲節과 蘇德裕의 亂으로 부터 光武 5年の 李在守亂까지 수많은 民亂이 끊이지 않았다.¹⁰⁾

註 8) 前掲論文 p.162-163.

9) 前註와 같음.

10) 前掲論文 p.164-165.) 濟州에서의 叛亂과 民擾)

이런 여러 事實들은 行政의 惠沢을 못받은 道民들의 官에 대한 不信과 反抗의 表現이요, 官에의 依存보다 自主, 自立으로 自身들의 生活을 지켜 나가려는 강한 意志의 發露로 볼것이다.

2. 地理的 側面

濟州道는 韓國의 최남단에 位置한 絶海孤島로서 東에 日本이, 西엔 南中國이, 南엔 琉球를 거쳐 東南亞가 連結되어 있다. 이러한 地理的 條件은 왜구의 侵入을 가장 激甚하게 받게 했고, 中央政府의 行政力이 미치지 어렵게 했으며 아울러 行政적으로 버림받은 섬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다.

또한 濟州道の 風土的 環境을 보면 高麗 穆宗때까지 火山爆發이 있었던 險難한 섬으로서,¹¹⁾ 中央의 漢拏山이 급한 傾斜로 바다에 줄기를 뻗혀내려 있다.

地面은 火山灰土로 덮였고, 빗물은 즉시 地下로 빠져 海邊에 이르러 湧出하므로 거의 논밭이 없으며 소위 石多의 밭농사만 하게 되어 있다. 거기에는 때때로 颱風이 掩襲하여 風多의 섬이란 呼稱까지 붙게 되었다. 이러한 風土條件으로 보리와 조를 주식으로 살아왔는데 風害, 水害, 飢饉의 歷史 記錄이 수없이 散見된다.¹²⁾

註 11) 前掲論文 p.148. 高麗 穆宗 5年과 10년에 두번이나 火山爆發이 있었음.

12) 前掲論文 p. 163 ~ 164 (濟州의 飢饉과 救恤)

흔히 濟州島의 生活相을 『地瘠民貧』이란 말로 表現하여 왔지만 文字 그대로 地瘠民貧의 生活이었던 것이다. 이런 끊임없는 災難에도 交通이 不便해 놓으니 官의 適切한 救護는 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島民들은 各自가 저마다 勤勉하고 儉素하고, 극도의 節約을 하지 않으면 生을 維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勤勉, 儉素, 自主, 自立, 功利, 利己, 云云의 道民性이 體質化되지 않을 수 없었던 理由가 있다.

이러한 苦難의 生活에다 官은 充分한 惠沢을 베풀기는 커녕 오히려 歲貢과 賦役을 强要하고 搾取를 加했다면 官의 存在는 道民에게 오히려 귀찮은 것이되고 指彈의 的이 되게 마련이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官에 대한 不信과 反抗의 意識을 찾아낼 수 있다.

3. 社会的 側面

섬이란 原来부터 閉鎖的인 社会의 運命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李朝 仁祖 7年부터 純祖末까지 약 2世紀期間에 걸쳐 濟州社会를 完全히 封鎖시킨 史實을 알고있다.¹³⁾ 이것은 地瘠民貧의 生活苦와 賦役과 虐待의 生活에서 벗어나 보려는 島民들에게 國法으로 出陸을 禁止시킨 일이다. 出陸을 禁止당한 島民은 오랜 세월을 外部와 杜絶된 섬生活을 해야했고, 그러므로서 閉鎖的 社会性은 더욱더 짙게 마련이었다.

註 13) 前掲論文, p.162 ~ 163 (濟州人の 陸地に 流亡移居와 그 生活相)

閉鎖된 社会生活이란 곧 村落共同体的 社会生活이다. 家族은 核家族的 色彩가 짙고 親族은 同一地域内に 集團化되고 婚姻은 島内에서만 通婚圈을 形成해 돌아간다. 村落이나 邑全体가 自給自足的 經濟를 營為하여 왔고, 村落 全体가 相夫相助로 協同하여 秩序를 維持하며 살아나왔다.

지금도 그 殘影이 남아 있는 것이 있지만, 村落의 運營과 秩序의 維持를 해온 村落組織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鄕長, ② 警民長, ③ 尊位, ④ 農監, ⑤ 譏察
⑥ 洞將

鄕長은 鄕會에서 뽑힌 部落의 長이요, 警民長은 部落民의 啓蒙 및 警防에 대한 事務를 맡았으며, 尊位는 一般庶務를 處理했다. 農監은 農事に 관한 事項, 稅穀等 事務를 担当했고, 譏察은 部落内の 査察, 搜查等 防犯에 관한 事項을 處理했으며 洞將은 使換을 統率하는 役이었다.

이러한 任員들의 部落民 自体에서 構成되고 任務를 遂行하여 部落의 社会秩序를 維持하고 運營해 가는 共同体社会가 日帝의 行政力이 미칠때까지 持續되었다. 14)

그러나 별 惠顧이 없는 官의 存在가 道民에게는 無意味 했을뿐 아니라 오히려 귀찮은 存在로 여겨졌을 것이다.

註 14) 玄容駿 “社会”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調査 報告書』
濟州道 発行, p. 85.

以上 歴史的, 地理的, 社会的 側面에서 道民의 官 (警察)에 對한 意識構造를 살펴 왔거니와 要約하면 濟州道民은 官의 存在意義를 認識 못했을뿐 아니라, 오히려 귀찮은 存在로서 被害意識을 앞세워 對하고 敬遠視하며 不信感과 反抗心이 갈린 生活을 해 왔다는 것이다.

第3節 濟州警察의 特殊性

祖国解放과 同時에 國立警察이 創立 (1945. 10. 21) 되었고, 그 이
듬해 濟州에도 2個 警察署 (濟州, 西嶺) 가 設置되어 (定員 512
名) 道內 治安을 担当하다가 1948年 4.3 暴動事件이 擧發되자
이의 鎮壓을 위해서 2個 警察署 (모슬포, 城山浦, 定員 1,536名)
가 增設되었으나 이로서도 不足하여 鐵道警察 忠南, 全南 警察에서
500余名이 支援部隊가 投入되어 事態鎮壓에 當하여 1957年 完全
鎮壓됨과 同時 2個 警察署가 폐지되어 現在에 이르고 있다.
(定員 586名)¹⁾

警察署 및 定員變動現況 (警察局人事統計綴參照)

區 分 年 度	警 察 署	定 員	出 身 道 別 狀 況		
			濟 州	他 道	他道比率
1947 年	2	512 名	428 名	84 名	16 %
1949	4	1,222	876	346	28 %
1951	4	1,536	1,024	512	33 %
1954	4	1,158	806	352	30 %
1957	2	586	425	161	27 %
1962	2	426	320	106	25 %
1970	2	678	584	94	14 %
1976	2	629	525	104	17 %

註 1) 『濟州道警察史』 (資料) 濟州道警察局 1968

이 時期의 濟州警察의 特徵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濟州道の
4.3 暴動事件 概要부터 알아보아야 하겠다. 濟州道民의 머리속에
아직도 生々하게 남아 있는 이 惡夢같은 事件은 아직 그 全貌
가 記錄되어 있는 것은 없고, 警察秘密이 維持되는 範圍内에서
그 大略만을 紹介하고자 한다. (여기에 各種 統計 숫자는 비공식
적인 것임. 2)

濟州島는 地理的 特殊環境으로 말미암아 解放直後부터 共產分子들
의 跳梁이 가장 尤甚하였고, 따라서 그들의 선동과 脅迫 등으로 全
島民의 思想은 日益 在傾化되어 治安은 累卵의 危機에 처하였으며
大小暴動은 接踵하였다.

1947. 3. 1 警察을 相對로한 3. 1 暴動事件이 發生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3. 1節 慶祝을 빙자하여 南勞黨濟州島委員會의 주도하에
島内各處에서 數千名씩 群衆을 動員하여 不法集會를 감행한 다음
反政府대모를 강행하여 民心을 極度로 攪亂케 하고 濟州邑内 觀德亭
앞 廣場에 모인 數萬群衆이 主動分子의 선동을 받아 濟州警察監察
庁 및 濟州署를 포위, 기습할 기세를 보이자, 警察은 不得已 兇惡
항거하는 그들에 대하여 示威發砲를 한결과 數名の 死傷者를 냄으
로서 事態는 一旦 鎮壓되었으나, 그들은 警察이 良民을 합부로 銃
殺하였다고, 모략宣傳으로 民.警離間策을 써서 各 機關에 總罷業을
操從하여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註 2) 前註와 같음

이리하여 島内治安이 紊亂하여 지자 中央에서는 鐵道警察, 忠南 全南警察에서 應援警察 500 余名을 보내어 事態鎮壓에 당하자 이 에 당황한 그들은 地下工作을 통하여 大々의인 暴動음모를 기도하 고 漢拏山 密林地帶에『아지트』를 構築하여 島内 完全赤化와 警察 官署 奇襲準備에 狂奔 하였다.

그들은 5. 10 選舉를 反對 한다는 ³⁾ 口號下에 島民들을 百方으로 煽動하여 選舉妨害 工作으로 暴動陰謀를 꾸렸으며, 당시 모슬포 주 둔 國防警備隊 第9 聯隊 文相吉(部隊長 暗殺犯 中尉)外 數名이 武器와 彈藥을 入手, 共匪를 도와 暴動을 도발하였던 것이다.

한편 國防警備隊가 모슬포에 주둔하자 反警思想을 가진 細胞를 위장 入隊시켜 全部隊를 完全장악하려는 叢計를 施行하였던 것이다

1948 年 3 月末日경 暴動事件의 魁首 金達三은 國防警備隊 共產頭 目 文相吉과 密회, 4 月 3 日 午前 2 時를 기하여 濟州島全域에 걸쳐 일제히 暴動을 일으켰으니 金達三이 指揮하는 民間暴徒는 14 個支 署를 襲撃 愛國志士들을 殺傷하고 放火 掠奪, 破壞等 같은 만행을 恣行하였고, 한편 文相吉이 指揮하는 警備隊兵力으로 濟州警察監察庁 및 濟州警察署를 完全 占領하려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當時 被害狀況)

警察官 6 名 戰死, 7 名 負傷,

良民 7 名被殺 28 名 負傷)

註 3) 金玉敏外 2 名共著『濟州達誌』 濟州 濟州新聞社. 1962.

警察戰力を 再整備 反撃을 가하자 그들은 全部가 漢拏山 密林속으로 潛跡하여 일시평온을 되찾은것 같았으나 그들은 繼續하여 警察官署 및 公共施設等에 奇襲破壞 行爲를 繼續하였던 것이다.

심지어는 1949. 1. 8 濟州島庁이 奇襲 전소되었고, 1952에는 濟州放送局, 西婦浦發電所가 奇襲破壞되는등 濟州島民은 不安과 恐怖속에 나날을 보내다가 警察部隊 (100司令部) 6個大隊와 國軍 무지개部隊가 一齊히 漢拏山에 投入 強力한 掃蕩作戰을 전개한 끝에

1957. 4. 2 最後의 共匪 吳元根을 生捕하므로서 9個星期에 걸친

4.3 事件은 完全鎮壓되고 이땅에 平和가 되찾게 되었다 ⁴⁾

註 4) 夫萬根『光復濟州 30年』서울 文潮社 1975. P. 43.

4.3 事件 被害 및 戰果表 (非公式) ⁵⁾

区 分	被 害		戰 果		
人 命	小 計	4,492 名	小 計	16,960 名	
	警 察 官 전 사상	270 "	死 殺	7,895 "	
	民 間 人 被 殺	1,330 "	生 捕	7,061 "	
	납 치	916	귀 순	2,004 "	
銃器 및 衣類食糧	銃 器 被 奪	234 정	銃 器 노획	324 정	
	彈 藥 被 奪	3,226 발	彈 藥 "	20,385 발	
	家 畜 被 害	1,915 두	家 畜 "	301 두	
	食 糧 被 奪	593 석	食 糧 "	310 석	
	衣 類 被 奪	12,449 점	衣 類 "	7,820 점	
建 物 燒 失	小 計	5,809 동	도 피 자	小 計	190 名
	警 察 官 署	6 "		国 内	41 名
	官 公 署	46 "		国 外	149 名
	民 家	5,757 "			
罹災民狀況	疎 開 部 落	113 部落			
	罹 災 世 帯	15,228 世帯			
	罹 災 民	80,065 名			

濟州警察은 建國初期부터 共產分子들과 피비린내나는 斗争의 連續으로 事態鎮壓에만 全力을 경주하여 왔던 것이다. 前項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濟州島民들은 4.3 暴動事件으로 人命被害가 全島民(約 25 万名)의 約 10%에 該當하는 25,000 余名에 이르고 바닷가

註 5) 『濟州道警察史』(資料) 濟州道警察局 1968.

部落을 除外한 中山間部落은 全部 疎開 (200 個部落中 113 個部落) 시키고 家屋을 태워 버렸으니 家屋 燒失이 2,809 채이고 罹災民이 80,065 名에 이르러 全島民의 半數는 被害를 입었고 그것도 長期間 (9 年) 繼續되었기 때문에 이를 鎮壓하기 爲한 警察活動에 따라 全島民은 警察에 대한 罪意識속에서 生活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被害者들은 思想的으로 徹底한 共產分子가 아니라 한 部落에 主動者 한 사람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다가 共產分子로 낙인을 찍히고 被害를 입었던 것이니 더욱더 警察에 대한 罪意識속에서 生活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事態鎮壓을 위한 他道 出身警察官 (全体的 約 $\frac{1}{3}$) 과 응원警察官 (約 500 余名) 및 西北青年⁶⁾ 들이 活動이 컸으며 이들은 對民關係를 오직 事態鎮壓이라는 目的이 強하게 作用되었기 때문에 對民奉仕라든지 親切奉仕같은 것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警察에 대한 島民의 排他的 感情이 커갔던 것이다.

註 6) 解放直後 黃海道 平安道等地의 反共靑年들로서 越冬하여 自進 濟州의 反共斗争에 가담한 者로서 約 2~3 百名에 달하였음.

第 3 章 調 査 成 果 分 析

第 1 節 理 解 度

住民들의 警察 및 警察業務에 對한 認識은 優先 警察을 어떻게 理解 하느냐는 問題와 直結된다. 警察業務의 內容은 물론 警察官과 警察官 署에 對한 一般住民의 이미지는 앞으로 전개될 意識構造形成에 가장 重要한 位置를 占하고 있다.

警察을 正確히 理解하지 못하고 어느한 側面만 그것도 警察의 住民에 對한 안 좋은 側面만을 알고 있다면 警察에 對한 不信, 反抗, 敬遠, 視하는것은 當然한 結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住民의 警察에 對한 理解를 어느程度하고 있는 者를 9個事項에 分쳐 質問 分析하였다.

問 : 1. 警察이 遂行하는 業務中에서 가장 重要한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表 : < 1 - 1 - 1 > 年 令 別 () 內 %

区 分 內 容	綜 合	1 . 20 代	2 . 30 代	3 . 40 代	4. 50代 以 上
1. 各種 犯罪 搜查 (犯人을 잡는 일)	264(50)	57(49)	30(58)	136(52)	41(42)
2. 海岸警備나 間諜을 잡는 일	106(20)	10(9)	9(17)	52(20)	35(35)
3. 交 通 団 束	43(8)	7(6)	8(15)	19(7)	9(9)
4. 保安事犯 団束	115(22)	41(36)	5(10)	55(21)	14(14)
計	528	115	52	262	99

表 : < 1 - 1 - 2 >

学 歴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 無 学	2 . 国 卒	3 . 中, 高卒	4 . 大卒以上
1 . 各種 犯罪 捜査 (犯人을 잡는일)	264(50)	3(21)	45(48)	144(49)	72(57)
2 . 海岸警備나 間諜을 잡는일	106(20)	8(58)	21(22)	62(21)	15(12)
3 . 交 通 団 束	43(8)	2(14)	15(16)	24(8)	2(2)
4 . 保安事犯 団束	115(22)	1(7)	13(14)	65(22)	36(29)
計	528	14	94	295	125

表 : < 1 - 1 - 3 >

職 業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 農 業	2 . 水産業	3 . 商 業	4 . 公務員 会社員
1 . 各種 犯罪 捜査 (犯人을 잡는일)	264(50)	84(49)	17(63)	86(50)	77(49)
2 . 海岸警備나 間諜을 잡는일	106(20)	40(23)	4(15)	42(24)	20(13)
3 . 交 通 団 束	43(8)	22(13)	3(11)	8(5)	10(6)
4 . 保安事犯 団束	115(22)	25(15)	3(11)	37(21)	50(32)
計	528	171	27	173	157

警察業務의 理解度を 測定하기 爲하여 優先 各機能別 重要度を
물어 보았던바 『各種 犯罪捜査(犯人을 잡는일)』이 50%로

제일 많고 다음이 『保安事犯 団束』으로 22%, 『海岸警備나 間諜을 잡는 일』이 20%, 『交通団束』이 8%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警察業務中에서 犯罪搜查 即 犯人을 잡는 일을 重要視하고 있음은 警察이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고 社会秩序維持를 爲해서도 무엇보다도 犯罪搜查에 全力을 傾注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保安事犯 団束, 海岸警備나 對間諜作戰業務를 遂行하여야 함을 暗視하고 있다.

1. 年令別 分類〈表 1-1-1〉

20代에서는 『犯罪搜查』가 49%인데 반하여 『保安事犯 団束』은 36%나 차지하여 젊은層에서는 『犯罪搜查』에 못지않게 『保安事犯 団束』을 重要視 하고 있으며, 50代에서는 反對로 『海岸警備나 間諜잡는 일』에 35%나 点하고 있어 日帝治下의 國家를 잃은 설움이 남아있어 國家安保에 깊은 關心을 表明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2. 學歷別 分類〈表 1-1-2〉

無學은 『海岸警備나 間諜을 잡는 일』에 58%, 重點을 두고 있는 反面 學歷이 높을수록 『犯罪搜查』에 (中. 高卒 49%, 大卒以上 57%) 重點을 두고 있음을 알수 있다.

職業別로 보면〈表 1-1-3〉과 같다.

公務員이나 會社員 即 俸給生活者가 『保安事犯 団束』에 깊은 關心을 (32%) 보이고 있음은 都市生活者의 周辺에서 各種 保安事犯 団束이 社会秩序 維持에 큰 役割을 担当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問：2. 警察官이 處理하는 業務量은 어느程度라고 생각하십니까？

表：＜1-2-1＞

年 令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20 代	2. 30 代	3. 40 代	4. 50 代 以 上
1. 너무 過重하다.	164(31)	32(28)	21(40)	82(31)	29(30)
2. 多小 過重하다.	180(34)	45(39)	16(31)	95(37)	24(25)
3. 普通이다.	165(31)	37(32)	12(23)	74(28)	41(41)
4. 작은 편이다.	19(4)	1(1)	3(6)	7(4)	4(4)
5. 아주작다.					
計	528	115	52	262	99

表：＜1-2-2＞

学 歷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無 学	2. 国 卒	3. 中 . 高 卒	4. 大 卒 以 上
1. 너무 過重하다.	164(31)	3(21)	22(23)	96(32)	43(34)
2. 多小 過重하다.	180(34)	4(29)	26(29)	103(35)	47(38)
3. 普通이다.	165(31)	7(50)	39(41)	88(30)	31(25)
4. 작은 편이다.	19(4)		7(7)	8(3)	4(3)
5. 아주작다.					
計	528	14	94	295	125

表 : < 1 - 2 - 3 >

職 業 別

() 内 %

区 分 内 容	綜 合	1. 農 業	2. 水産業	3. 商 業	4. 公務員 会社員
1. 너무 過重하다.	164(31)	45(26)	7(26)	56(32)	56(36)
2. 多小 過重하다.	180(34)	54(32)	8(30)	59(34)	59(37)
3. 普通이다.	165(31)	62(36)	12(44)	53(31)	38(24)
4. 작은 편이다.	19(4)	10(6)		5(3)	4(3)
5. 아주작다.					
計	528	171	27	173	157

警察官의 處理하는 業務量은 『多小 過重하다』가 34%, 『너무 過重하다』가 31%, 『普通이다』가 31%로서 대부분이 住民들은 警察이 處理하는 業務量이 『過重하다』는 것을 認定(65%)하고 있고 『작은 편이다』는 不過 4% 程度밖에 안 나타나는 것은 現在 警察官이 担当하는 業務量으로 볼때 當然한 結果라 보아지며 이 業務量 過多로 因하여 業務處理에 소홀한 點이 나타나는 아쉬움이 있다 하겠다.

1. 年令別 分類<表 1 - 2 - 1>

學歷이 낮을수록 警察業務量의 過多를 認識하지 못하고 (『普通이다』가 無學 50%, 國卒 41%), 學歷이 높을수록 業務量의 過多를 認識하는 것은 社會現實을 多角度로 判斷할 수 있는 階層에서 나타나는 現象이라 매우 좋은 結果라 하겠다.

2. 學歷別 分類 < 表 1 - 2 - 3 >

商業이나 俸給生活者는 警察業務가 『너무 過重하다』고 보고 (商業 32%, 公務員 36%) 있는 反面, 農業이나 水産業을 하는 者는 『普通이다』고 보고 (農業 36%, 水産業 44%) 있어 對照를 이루고 있음은 警察官을 많이 接觸하는 職業을 가진 者들이 警察官을 깊이 理解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問 : 3. 다른 一般公務員과 比較해서 警察官의 教養程度는 어떻다
고 보십니까?

表 : < 1 - 3 - 1 >

年 令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20 代	2. 30 代	3. 40 代	4. 50 代 以 上
1. 대부분이 尊敬을 받으만 하다.	31(6)	2(2)	5(10)	16(6)	8(8)
2. 대체로 教養이 갖추어 있다.	105(20)	13(11)	9(17)	57(22)	21(26)
3. 普通이다.	229(43)	41(36)	22(42)	124(47)	42(43)
4. 教養이 부족한 편이다.	137(26)	47(41)	11(21)	60(23)	19(19)
5. 教養이 극히 부족 하다.	26(5)	12(10)	5(10)	5(2)	4(4)
計	528	115	52	262	99

表 : < 1 - 3 - 2 >

学 歴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無 学	2. 国 卒	3. 中, 高 卒	4. 大 卒 以 上
1. 대부분이 尊敬을 받을만 하다.	31(6)	(2)	12(13)	17(7)	2(2)
2. 대체로 敎養이 갖추어 있다.	105(20)	5(36)	24(25)	66(22)	10(8)
3. 普通이다.	229(43)	4(28.5)	41(44)	134(45)	50(40)
4. 敎養이 不足한편이다	137(26)	4(28.5)	16(17)	65(22)	52(41)
5. 敎養이 극히 不足 하다.	26(15)	1(7)	1(1)	13(4)	11(9)
計	528	14	94	295	125

表 : < 1 - 3 - 3 >

職 業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般 業	2. 水 産 業	3. 商 業	4. 公 務 員 會 社 員
1. 대부분이 尊敬을 받을만 하다.	31(6)	14(8)	5(19)	10(6)	2(1)
2. 대체로 敎養이 갖추어 있다.	105(20)	35(20)	3(11)	41(24)	26(17)
3. 普通이다.	229(43)	85(50)	9(33)	74(42)	61(39)
4. 敎養이 不足한 편이다.	137(26)	31(18)	8(30)	39(22)	59(37)
5. 敎養이 극히 不足 하다.	26(5)	6(4)	2(7)	9(6)	9(6)
計	528	171	27	173	157

위 問2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警察官은 過重한 業務를 處理하고 있는데, 이러한 過重한 業務를 處理하는 警察官의 教養은 어느 程度인지 他公務員들과 比較하여 볼때 『普通이다』가 43%, 『不足한 편이다』가 26%, 『대체로 갖추어 있다』가 20%로서 警察官의 教養程度는 『普通』 또는 『普通以下』라고 認識하고 있음은 매우 重大한 問題라 생각된다.

警察業務의 內容으로 보나, 處理하는 量으로 보나 他公務員에 比하여 知識이나 教養이 높게 要求되는 데도 오히려 그 反對現象을 나타내고 있음은 看過할 수 없는 問題라 생각된다.

1. 年令別 分類<表 1-3-1>

警察官의 教養程度를 40代는 『普通』(47%)으로 보나 20代에서는 反對로 『普通以下』(41%)로 보고있음은 이 現實社會에 對한 否定的 側面과 反抗의 氣質이 濃厚하기 때문이며, 反面에 50代 以上에서는 『普通以下』가 19%인데 比하여 『대체로 갖추어 있다』가 26%나 된 點은 이를 証明하고 있다 하겠다.

2. 學歷別 分類<表 1-3-1>

警察官의 教養程度는 大卒以上 學歷이 높은 階層에서는 『普通以下』(41%)로 보고 學歷이 낮을수록 『대체로 갖추어 있다』고 보았다.

教養程度의 判斷의 基準은 自己 自身을 基準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現象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보여지기도 하나 어쨌든 警察官은 教養이 갖추어 있는 사람으로 보지않고 있음은 重要한 問題를

던져준다 하겠다.

問：4. 支派出所에서 쓰는 經費는 어떻게 調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表：＜1-4-1＞ 年 令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20 代	2. 30 代	3. 40 代	4. 50 代 以 上
1. 国家에서 주는 돈 으로 充當한다.	251(48)	60(52)	26(50)	120(46)	45(45)
2. 豫算만으로는 모자 라서 尤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154(29)	27(23)	11(22)	85(32)	31(32)
3. 警察対象業者로 부 터 도움을 받는다.	71(13)	11(10)	7(13)	38(15)	15(15)
4. 事件과 關聯하여 얻어 쓴다.	52(10)	17(15)	8(15)	19(7)	8(8)
計	528	115	52	262	99

表 : < 1 - 4 - 2 >

学 歷 別

() 内 %

区 分 内 容	綜 合	1 . 無 学	2 . 国 卒	3 . 中 , 高 卒	4 . 大 卒 以 上
1 . 国家에서 주는 돈 으로 充当한다.	251(48)	4(29)	47(49)	140(47)	60(47)
2 . 豫算만으로는 모자 라서 유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154(29)	2(13)	25(27)	90(31)	37(30)
3 . 警察対象業者로 부 터 도움을 받는다	71(13)	4(29)	14(15)	41(14)	12(10)
4 . 事件과 關聯하여 얻어 쓴다.	52(10)	4(29)	8(9)	24(8)	16(13)
計	528	14	94	295	125

表 : < 1 - 4 - 2 >

職 業 別

() 内 %

区 分 内 容	綜 合	1 . 農 業	2 . 水 産 業	3 . 商 業	4 . 公務員 会社員
1 . 国家에서 주는 돈 으로 充当한다.	251(48)	86(50)	14(52)	80(46)	71(45)
2 . 豫算만으로는 모자 라서 유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154(29)	39(23)	7(26)	51(29)	57(36)
3 . 警察対象業者로 부 터 도움을 받는다	71(13)	25(15)	2(7)	27(16)	17(11)
4 . 事件과 關聯하여 얻어 쓴다.	52(10)	21(12)	4(15)	15(9)	12(8)
計	528	171	27	173	157

警察官署의 不条理, 庶政刷新 問題와 關聯해서 支派出所에서 쓰는 經費의 調達方法을 물었는데,

『國家에서 주는 돈으로 充當한다』가 48%를 차지하나, 아직도 모자라서 『유지로 부터 도움을 받는다』가 29%, 『対象業者로 부터 도움을 받는다』가 13%, 더군다나 『事件과 關聯하여 얻어 쓴다』가 10%나 되어 아직도 支派出所에서 쓰는 經費때문에 民弊를 기치고 있다고 보고(52%) 있음은 매우 가슴아픈 일이다.

한편 國家에서는 이러한 點을 勘案 警察官署 運營費를 大幅 引上現實化 함으로서 警察業務改善에 因索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年令別 分類<表 1 - 4 - 1>

警察官署의 運營費 調達方法을 20.30代 젊은 層에서는 『事件과 關聯하여 얻어 쓴다』고 보고(15%) 있고 40.50代에서는 『対象業者로 부터 얻어 쓴다』고 보고(15%) 있어 反對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어쨌든 警察官署 運營費를 國家 豫算으로 充當하지 못하고 다른 方法으로 調達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없이 警察行政 發展에 큰 障礙要素라 하겠다.

問：5. 가장 싫은 警察官은 어떤 사람입니까?

表：〈 1 - 5 - 1 〉

年 令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20 代	2. 30 代	3. 40 代	4. 50 代 以上
1. 捜査刑事	103(20)	16(14)	10(19)	60(23)	17(17)
2. 情報刑事	52(10)	12(10)	8(15)	24(9)	8(8)
3. 交通警察官	129(24)	33(29)	12(23)	55(21)	29(30)
4. 支派出所 職員	99(19)	27(24)	15(29)	42(16)	15(15)
5. 保安係 職員	55(10)	16(14)	2(4)	27(10)	10(10)
6. 其他의 警察官	90(17)	11(10)	5(10)	54(21)	20(20)
計	528	115	52	262	99

表：〈 1 - 5 - 2 〉

学 歴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無 学	2. 国 卒	3. 中 高 卒	4. 大 卒 以上
1. 捜査刑事	103(20)	2(14)	17(18)	58(20)	26(21)
2. 情報刑事	52(10)	()	8(9)	31(11)	13(10)
3. 交通警察官	129(24)	3(21.5)	21(22)	68(23)	37(30)
4. 支派出所 職員	99(19)	3(21.5)	20(21)	48(16)	28(22)
5. 保安係 職員	55(10)	4(29)	6(6)	30(10)	15(12)
6. 其他의 警察官	90(17)	2(14)	22(24)	60(20)	6(5)
計	528	14	94	295	125

表 : < 1 - 5 - 3 >

職 業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 農 業	2 . 水 産 業	3 . 商 業	4 . 公務員 会社員
1 . 捜査刑事	103(20)	26(15)	6(22)	34(20)	37(24)
2 . 情報刑事	52(10)	19(11)	2(7.5)	13(8)	18(11)
3 . 交通警察官	129(24)	37(22)	8(30)	50(29)	34(22)
4 . 支派出所 職員	99(19)	36(21)	6(22)	30(17)	27(17)
5 . 保安係 職員	55(10)	19(11)	3(11)	19(11)	14(9)
6 . 其他의 警察官	90(17)	34(20)	2(7.5)	27(15)	27(17)
計	528	171	27	173	157

이상과 같은 狀況속에서 警察業務를 遂行하고 있는 警察官들을 機能別로 어떻게 認識하고 理解하고 있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싫어하는 警察官은? 『交通警察官』 24%, 『捜査刑事』 20%, 『支派出所職員』 19% 順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住民들과 接觸이 많은 警察官일 수록 싫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一般住民의 自然的 自由를 가장많이 制限하는 業務를 遂行하는 者를 싫어하는 現象이라 하겠다.

1. 年令別 分類<表 1 - 5 - 3 >

싫어하는 警察官은 20.30代의 젊은 層에서는 『支派出所 職員』 (24%, 29%) 이고 40.50代에서는 『捜査刑事』 (23%, 17%) 로 나타나고 있음은 젊은 層에서는 사소한 犯罪 즉 輕犯을 주로 다루는 支派出所 職員을 많이 接觸하기 때문에 捜査刑査보다 더

싫어하고, 또 反面에 젊은層에서는 搜查刑事을 하나의 『FBI』나 『콜롬보刑事』와 같이 동경의 對象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나타난 現象이라 하겠다.

또한 『交通警察官』에 대하여서는 年令에 區別없이 모두 싫어한다.

2. 學歷別 分類〈表 1 - 5 - 2〉

싫어하는 警察官은 學歷의 高低에 불구하고 『交通警察官』을 싫어하나 學歷이 높을수록 『搜查刑事』를 싫어하고 (中. 高卒 20 % 大卒 21 %) 學歷이 낮을수록 搜查刑事 대신에 『支派出所 職員』을 싫어하고 있다. (無學 21.5 % 國卒 21 %)

3. 職業別 分類 (表 1 - 5 - 3)

商業이나 公務員, 公社員等 俸給生活者는 『交通警察官』 (29 %, 22 %) 이나 『搜查刑事』 (20 %, 24 %) 를 싫어하나 反面에 農業이나 水産業에 從事하는 者는 搜查刑事 보다 『支派出所 職員』 (21 %, 22 %) 을 더 싫어 하고 있음을 볼때 住民의 職業 即 日常生活과의 關連度에 따라 警察을 싫어하는 비중이 正比例한다고 보아진다.

問 : 6. 만약 새職業을 攄하게 된다면 貴下는 警察官을 攄하시지
않겠습니까?

表 : < 1 - 6 - 1 > 年 令 別 () 内 %

区 分 内 容	綜 合	1. 20 代	2. 30 代	3. 40 代	4. 50 代 以上
1. 기꺼이 警察官되는 것을 攄하겠다.	25(5)	4(3)	3(6)	11(4)	7(7)
2. 事情에 따라 攄 할 수도 있다.	214(40)	32(28)	20(38)	121(46)	41(41)
3. 警察官이 되고 싶지 않다.	289(55)	79(69)	29(56)	130(50)	51(52)
計	528	115	52	262	99

表 : < 1 - 6 - 2 > 学 歷 別 () 内 %

区 分 内 容	綜 合	1. 無 学	2. 国 卒	3. 中 高 卒	4. 大 卒 以上
1. 기꺼이 警察官되는 것을 攄하겠다.	25(5)	1(7)	3(3)	18(6)	3(2)
2. 事情에 따라 攄할 수도 있다.	214(40)	7(50)	41(44)	134(46)	32(26)
3. 警察官이 되고 싶 지 않다.	289(55)	6(43)	50(53)	143(48)	90(72)
計	528	14	94	295	125

表 : < 1 - 6 - 3 >

職 業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 般 業	2 . 水 産 業	3 . 商 業	4 . 公 務 員 会 社 員
1 . 기꺼히 警察官되는 것을 扞하겠다.	25(5)	8(5)	2(7)	7(4)	8(5)
2 . 事情에 따라 扞할 수도 있다.	214(40)	84(49)	7(26)	69(40)	54(34)
3 . 警察官이 되고 싶 지 않다.	289(55)	79(46)	18(67)	97(56)	95(61)
計	528	171	27	173	157

人間이 갖는 가장 基本的인 慾求의 하나가 集團에 屬하는 기쁨
이며 이는 職業에 대한 意識態度로 나타나기 때문에 警察이라는
職業이 어느정도 人氣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매우 重要한
일이라 믿어지어 이 問題를 扞하였다. 만일 새로운 職業을 扞한
다면,

『警察官이 되고 싶지 않다』가 무려 55%를 点하고 『境遇에
따라 扞할 수도 있다』가 40%로 住民들은 警察官이라는 職業을
싫어하는 것은 分명한 事實이다.

이러한 現象은 앞으로 警察行政의 目標達成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게 되는데 이의 타개책이 무엇보다도 重要한 課題라 하겠다.

1. 年令別 分類<表 1 - 6 - 4>

警察官이 『되고 싶지 않다』(55%)의 境遇 20代에서는 67%인
데 反하여 40代에서는 50%로 나타나 젊은層에서 더 싫어하고 있

으며 反面에 警察官을 『事情에 따라 折할 수도 있다』(40%)의 境遇도 20代에서는 不過 28%인데 反하여 40代에 가서는 무려 46%나 되고 있음은 역시 젊은層에서 더 싫어하고 있음을 反映하고 있다고 하겠다.

2. 學歷別 分類<表 1-6-3>

警察官이 『되고싶지 않다』(55%)와 『事情에 따라 折할 수도 있다』(40%)가 中.高卒 以下에서는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나 大卒以上에서는 『되고싶지 않다』가 무려 72%로 學歷이 높은 者들은 警察官이 될려고 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職業別 分類<表 1-6-3>

農業에 從事하는 者들은 警察官을 『事情에 따라 折할 수도 있다』(49%)고 생각하는 反面 여타 職業에 從事하는 者들은 모두가 警察官이 『되고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 農業보다는 人氣가 있으나 他 職業보다는 人氣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問: 7. 警察官이 되고싶지 않다면 그 理由는 무엇입니까?

表: <1-7-1>

年 令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20代	2. 30代	3. 40代	4. 50代 以上
1. 일이 많아 고생만 하니까	80(15)	16(14)	7(13)	39(15)	18(18)
2. 月給이 적기때문에	58(11)	16(14)	7(13)	25(10)	10(10)
3. 罪人을 다루는 일 을 하니까	238(45)	48(42)	24(47)	127(48)	39(39)
4. 다른 職業보다 보 람이 없으니까	152(29)	35(30)	14(27)	71(27)	32(33)
計	528	115	52	262	99

表 : < 1 - 7 - 2 >

学 歷 別

() 内 %

区 分 内 容	綜 合	1 . 無 学	2 . 国 卒	3 . 中, 卒 高 卒	4 . 大 卒 以 上
1 . 일이 많아 고생만 하니까	80(15)	3(21)	11(12)	49(17)	17(14)
2 . 月給이 적기때문에	58(11)	2(15)	9(10)	31(11)	16(13)
3 . 罪人을 다루는 일 을 하니까	238(45)	6(43)	50(52)	143(48)	49(39)
4 . 다른 職業보다 보 람이 없으니까	152(29)	3(21)	24(26)	72(24)	43(34)
計	528	14	94	295	125

表 : < 1 - 7 - 3 >

職 業 別

() 内 %

区 分 内 容	綜 合	1 . 農 業	2 . 水 産 業	3 . 商 業	4 . 公 務 員 会 社 員
1 . 일이 많아 고생만 하니까	80(15)	22(13)	5(19)	28(16)	25(16)
2 . 月給이 적기때문에	58(11)	12(7)	5(19)	22(13)	19(12)
3 . 罪人을 다루는 일 을 하니까	238(45)	91(53)	9(32)	68(39)	70(45)
4 . 다른 職業보다 보 람이 없으니까	152(29)	46(27)	8(30)	55(32)	43(27)
計	528	171	27	173	157

問 6 과 聯關되는 事項으로서 一般住民들의 싫어하는 職業으로서의 警察官이 되고싶지 않은 理由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點이 問題解決에 重要な 要件라 하겠다.

警察官이 되고싶지 않다면 그 理由는 『罪人을 다루는 일을 하니까』가 45 %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다른職業 보다 보람이 없으니까』가 29 % , 『일이 많아 고생하니까』가 15 % , 『月給이 적기 때문에』가 11 % 順으로 되어 있는바 警察業務 自体가 즉 警察이 機能이 住民들의 비위를 거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警察官이 『되고싶지 않다』고 하는 것은 反面에 警察을 싫어하고 敬遠視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警察行政은 對民關係에 있어서 어려운 點이 많다 하겠다.

1. 年令別 分類 < 表 1 - 7 - 1 >

警察官이 되고싶지 않은 理由가 20代와 50代에서는 『罪人을 다루는 일을 하니까』와 『보람이 없으니까』가 비슷비슷하여 (前者 42 % 對 30 % 後者 39 % 對 33 %) 業務의 內容이나 별 차이없이 功名心을 重視한데 反하여 30, 40代에서는 『罪人을 다루는 일을 하니까』(47 % , 48 %) 싫어한다고 業務의 內容을 重視한 點은 功名心보다도 實利를 생각한 結果라 하겠다.

2. 學歷別 分類 < 表 1 - 7 - 2 >

警察官이 되고싶지 않은 理由가 學歷이 높을수록 『보람이 없으니까』(34 %)인데 反하여 中・高卒 以下에서는 『罪人을 다루는 일을 하니까』에 重點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學歷이 높을 수록 職業觀이 功名心 즉 『보람』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 結果라 하겠다.

問：8. 警察官이 業務 處理狀況을 볼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表：< 1 - 8 - 1 >

年 令 別

() 内 %

区 分 内 容	綜 合	1. 20 代	2. 30 代	3. 40 代	4. 50 代 以 上
1. 매우 意慾的이다.	56(11)	8(7)	5(10)	30(12)	13(13)
2. 대체로 意慾을 가지고 일을 한다.	161(30)	20(17)	26(50)	84(32)	31(31)
3. 普通이다.	204(39)	36(32)	9(17)	119(45)	40(41)
4. 마지못해 하는 것같은 印象이다.	107(20)	51(44)	12(23)	29(11)	15(15)
計	528	115	52	262	99

表：< 1 - 8 - 2 >

學 歷 別

() 内 %

区 分 内 容	綜 合	1. 無 學	2. 國 卒	3. 中 高 卒	4. 大 以 上 卒
1. 매우 意慾的이다.	56(11)	4(29)	9(10)	16(5)	7(6)
2. 대체로 意慾을 가지고 일을 한다.	161(30)	4(29)	33(35)	100(34)	24(29)
3. 普通이다.	204(39)	6(42)	42(45)	127(43)	49(39)
4. 마지못해 하는 것같은 印象이다.	107(20)	(0)	10(10)	52(18)	45(36)
計	528	14	94	295	125

表: < 1 - 8 - 3 >

職 業 別

() 内%

内 容 \ 区 分	綜 合	1. 農 業	2. 水 産 業	3. 商 業	4. 公 務 員 會 社 員
1. 매우 意慾的이다.	56(11)	16(9)	6(22)	24(14)	10(7)
2. 대체로 意慾을 가 지고 일을 한다.	161(30)	58(34)	5(19)	55(32)	43(27)
3. 普通이다.	204(39)	70(41)	7(26)	59(34)	68(43)
4. 마지못하여 하는 것같은 印象이다.	107(20)	27(16)	9(33)	35(20)	36(23)
計	528	171	27	173	157

住民들이 警察에 대한 理解度를 알아보기 위해서 警察官들의 業務遂行 狀態를 어떻게 느끼고 있나를 参考삼아 물어보았다.

이 問題는 警察官이 士氣問題와도 關聯이 되는 問題로서 警察의 이미지 形成에 매우 重要한 事項이라 하겠다.

警察官이 業務處理 狀況을 볼때 『매우 意慾的』이라고 느끼는 境遇는 不過 11%에 不過하고 『대체로 意慾을 가지고 일한다』가 30%, 『普通이다』가 39%이며 심지어는 『마지못하여 하는것같은 印象이다』가 20%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 하겠다.

3. 年令別 分類<表 1 - 8 - 1 >

警察官이 業務處理 狀態를 볼때 20代에서는 『마지못하여 하는것같은 印象이다』가 44%나 나타나고 있어 젊은層에서는 警察官

의 業務處理 態度는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反面, 30代以上이면 『대체로 意慾을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50%) 보고 있음은 매우 對照的 이다.

2. 學歷別 分類〈表 1 - 8 - 3〉

警察官이 業務處理 狀態를 中, 高卒 以下の 低學歷 所有者에게서 는 『대체로 意慾을 가지고 일한다』고 보고 (29.35.34%) 있으며, 反面에 大卒以上 高學歷 所有者는 『마지못하여 하는것같은 印 이다』고 보고 (36%) 있는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

3. 職業別 分類〈表 1 - 8 - 3〉

警察官의 業務處理 狀態를 볼때 農業이나 商業에 從事하는 者는 대체로 『意慾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보고 (34%, 32%) 있는 反面에 水産業이나 公務員, 会社員等 俸給生活者는 『마지못하여 하는것 같은 印象이다』고 보고 (33%, 23%) 있다.

第 2 節 信 賴 度

前節에서 살펴본 警察官 또는 警察官署의 生態를 理解하는 問題에 못지않게 여기에서 論할 警察에 對한 信賴度(性)의 問題는 警察行政發展에 重大한 事項의 하나라 하겠다. 警察에 對한 一般住民의 信賴度の 問題는 警察官의 業務處理의 公正性과도 直結되는 事項이고 不条理, 庶政刷新과도 連關되는 事項으로서 警察行政의 發展을 期하려면 住民들로부터 돈독한 信賴獲得없이 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一般住民의 警察을 어느程度 믿고 있느냐 하는 問題와 밀지 않은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正確히 把握하기 爲해서 本節에서는 總 8 個項에 對하여 質問 그 結果를 分析하였다.

問：1 警察官이 하는일은?

表：〈 2 - 1 - 1 〉

年 令 別

() 内%

内 容 \ 区 分	綜 合	1. 20 代	2. 30 代	3. 40 代	4. 50 代 以上
1. 全적으로 믿을수 있다.	74(14)	11(10)	6(12)	43(16)	14(14)
2. 대체로 믿을만 하다.	211(40)	34(30)	18(35)	115(44)	44(44)
3. 보통이다.	212(40)	56(49)	34(65)	98(37)	34(34)
4. 믿을수 없다	31(6)	14(12)	4(9)	6(3)	7(8)
計	528	115	52	262	99

表 : < 2 - 1 - 2 >

学 歷 別

() 内 %

内 容 \ 区 分	綜 合	1. 無 学	2. 国 卒	3. 中, 高 卒	4. 大 卒 以上
1. 全的으로 믿을수 있다.	74(14)	3(21)	13(14)	50(17)	8(6)
2. 대체로 믿을만 하다.	211(40)	8(57)	37(39)	127(43)	39(31)
3. 보통이다.	212(40)	2(14)	37(39)	109(36)	64(51)
4. 믿을수 없다.	31(6)	1(8)	7(8)	9(4)	14(12)
計	528	14	94	295	125

表 : < 2 - 1 - 3 >

職 業 別

() 内 %

内 容 \ 区 分	綜 合	1. 農 業	2. 水 産 業	3. 商 業	4. 公 社 員
1. 全的으로 믿을수 있다.	74(14)	26(15)	5(19)	25(14)	18(11)
2. 대체로 믿을만 하다.	211(40)	74(43)	9(33)	71(41)	57(36)
3. 보통이다.	212(40)	64(37)	8(30)	67(39)	73(46)
4. 믿을수 없다.	31(6)	7(5)	5(19)	10(6)	9(6)
計	528	171	27	173	157

審察官들의 處理하는 業務를 어느程度 믿을수 있느냐는 質問에 對하여 『全的으로 믿을수 있다』는 境遇는 不過 14%程度이고 더군다나 『믿을수 없다』마저도 6%나 나타나고 있으며 『보통이다』가 40% 『대체로 믿을만 하다』가 40%로 나타나

警察을 아직도 信賴하지 못하고 信賴한다 하더라도 『믿을만 하다』(40%)程度로 警察을 믿는데도 疑心을 갖고있지 않으면 아주 조심스럽게 믿으려는 狀況에 處하고 있다고 하겠다. 警察業務는 大部分 法執行 業務로서 住民에게 自然의 自由를 制限하고 強制手段을 行使하는것이 보통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他國家 作用에 比하여 全幅的인 信賴를 얻어야 할 처지인데도 이러한 現象을 보여주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時急히 信賴獲得에 全力을 경주하여야 할것이다.

1. 年令別 分類(表 2 - 1 - 1)

警察官에 對한 信賴度를 年令別로 分類하여 보면 警察官이 하는 일은 『매체로 믿을만 하다』가 20代에서는 30%, 30代에서는 35%, 40代에서는 44%, 50代以上에서도 44%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믿고 있고, 反對로 『보통이다』는 20代에서는 49%, 40代에서 37%, 50代以上에서는 34%로 나타나 젊은層보다는 나이가 많은 層일수록 警察을 더 信賴한다고 보아진다.

2. 學歷別 分類(表 2 - 1 - 2)

警察이 하는일에 對하여 學歷이 높을수록 덜 믿고 알을수록 더 믿고 있다. 即 大卒以上者는 『믿을만 하다』가 31%인데 반하여 『보통이다』가 51%나 차지하며. 國卒이 境遇도 前者와 後者가 모두 39%로 나타나고 있다.

3. 職業別 分類 (表 - 2 - 1 - 3)

警察官이 하는 일에 대하여 他職業従事者 들 보다 公務員, 社員等 俸給生活者가 『대 체로 믿을만하다』가 36 %, 『보통이다』가 46 %로 警察을 덜 믿고 있다고 하겠다.

問 : 2. 警察官을 다른 職業을 가진 사람과 比較할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

表 : < 2 - 2 - 1 > 年 令 別 () 内 %

区 分 内 容	綜 合	1. 20 代	2. 30 代	3. 40 代	4. 50 代 以 上
1. 부정 이 많다.	126(24)	44(38)	10(19)	47(18)	25(25)
2. 부정 이 적다.	63(12)	16(14)	8(15)	23(9)	16(16)
3. 청렴하다.	62(12)	9(8)	9(17)	34(13)	10(10)
4. 보통이다.	277(52)	46(40)	25(49)	158(60)	48(49)
計	528	115	52	262	99

表 : < 2 - 2 - 2 > 学 歷 別 () 内 %

区 分 内 容	綜 合	1. 無 学	2. 国 卒	3. 中, 高 卒	4. 大 卒 以 上
1. 부정 이 많다.	126(24)	1(7)	23(24)	60(20)	42(34)
2. 부정 이 적다.	63(12)	5(36)	7(7)	34(12)	17(14)
3. 청렴하다.	62(12)	2(14)	11(12)	41(14)	8(6)
4. 보통이다.	277(52)	6(43)	53(57)	160(54)	58(46)
計	528	14	94	295	125

表 : (2 - 2 - 3)

職 業 別

() 内 %

区 分 内 容	綜 合	1 . 農 業	2 . 水 産 業	3 . 商 業	4 . 公 務 員
1 . 부정 이 많다 .	126 (24)	43 (25)	8 (30)	33 (19)	42 (27)
2 . 부정 이 적 다 .	63 (12)	23 (13)	3 (11)	20 (12)	7 (11)
3 . 청 령 하 다 .	62 (12)	25 (15)	2 (7)	19 (11)	16 (10)
4 . 보 통 이 다 .	277 (52)	80 (47)	14 (52)	101 (58)	82 (52)
計	528	171	27	173	157

警察官을 全的으로 믿을 수 없는 原因이 무엇이겠느냐는 問題를 業務處理의 公正性의 側面에서 살펴보기 爲해서 警察官을 다른 職業을 가진 사람과 比較할때, 『부정 이 많다』가 24%, 『보통 이 다』가 52%인데 比하여 『부정 이 적다』가 12%, 『청 령 하 다』가 12%인바 이는 단적으로 警察社會에는 아직도 他職種에 比하여 不政, 不条理가 常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바, 이외 타 결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1. 年令別 分類 (表 2 - 2 - 1)

警察官들을 20代에서는 『不正 이 많다』(38%)로 보고 40代에서는 『보통 이 다』(60%)로 보고 있는바 이는 젊은층에서는 警察을 否定的인 側面에서 보고있는 反面에 40代에서는 理性的으로 냉정 하게 보고있는 結果라 하겠다.

2. 學歷別 分類 (表 - 2 - 2 - 2)

警察官이 하는 일은 中, 高卒以下에서도 『보통이다』로 보고 있는 反面에 大卒以上 學歷이 높을수록 『不正이 많다』고 보고 (34%) 있음은 前項과 같이 젊은 知性人에게는 不正이 많은 것으로 認識되고 있는點에 留意하여야 하겠다.

問 : 3. 警察官의 各種事件 處理와 團束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

表 : < 2 - 3 - 1 >

年 令 別

() 内 %

内 容 \ 区 分	綜 合	1 . 20 代	2 . 30 代	3 . 40 代	4 . 50 代 以 上
1. 公正하게 處理한다고 생각 한다 .	120(23)	10(9)	19(37)	65(25)	26(26)
2. 大部分 公正하나 가끔 正실 에 흘러 不公正하게 處理하는 것 같다.	262(50)	60(52)	22(42)	138(52)	42(42)
3. 公正하게 處理하는 境遇와 不公正하게 處理하는 境遇가 반반 程度이다	112(21)	30(26)	10(19)	46(18)	26(26)
4. 大部分 正실에 흘러 不公正 하게 處理한다.	34(6)	15(13)	1(2)	13(5)	5(6)
計	528	115	52	262	99

表：〈 2 - 3 - 2 〉

学 歴 別

() 内%

内 容 \ 区 分	綜 合	1. 無 学	2. 国 卒	3. 中高 卒	4. 大卒以上
1. 公正하게 処理한다고 생각한다.	120(23)	11(79)	25(27)	70(24)	14(11)
2. 大部分 公正하나 가끔 情実 에 흘려 不公正하게 處理하는 것 같다.	262(50)	2(14)	46(49)	152(52)	62(50)
3. 公正하게 處理하는 境遇와 不公正하게 處理하는 境遇가 반반 程度이다.	112(21)	()	17(18)	59(20)	36(29)
4. 大部分 情実에 흘려 不公正 하게 處理 한다.	34(6)	1(7)	6(6)	14(4)	13(10)
計	528	14	94	295	125

表：〈 2 - 3 - 3 〉

職 業 別

() 内%

内 容 \ 区 分	綜 合	1. 農 業	2. 水産業	3. 商 業	4. 公務員 会社員
1. 公正하게 處理한다고 생각한다.	120(23)	48(28)	7(26)	39(23)	26(17)
2. 大部分 公正하나 가끔 情実에 흘려 不公正하게 處理하는것 같다.	262(50)	74(43)	12(44)	96(55)	80(51)
3. 公正하게 處理하는 境遇와 不 公正하게 處理하는 境遇가 반반 程度이다.	112(21)	38(22)	7(26)	27(16)	40(25)
4. 大部分 情実에 흘려 不公正하 게 處理 한다.	34(6)	11(7)	1(4)	11(6)	11(7)
計	528	171	27	173	157

警察業務中에서도 가장 代表的인 各種 事件處理을 어떻게 意識하고 있는가? 하는 問題는 警察이 信賴를 獲得하는데 가장 重要的 事項이라 하겠다.

따라서 本問에서는 警察官의 各種 事件處理과 團束을 어떻게 보는가? 『公正하게 處理한다』가 不過 23 %밖에 안되고 『大部分 公正하나 가끔 情實에 흘러 不公正하게 處理하는것 같다』가 무려 50 %이고 『公正』과 『不公正』이 『반반이다』가 21 %, 심지어는 『不公正하게 處理한다』가 6 %나 나타나고 있음은 가장 公正하게 處理하여야 할 警察業務가 이와같이 情實에 흘러 不公正하게 處理한다고 意識하고 있음은 前問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警察의 信賴 喪失에 決定的인 要因이 되고있다.

1. 年令別 分類 (表 2 - 3 - 1)

20代의 境遇 『公正하게 處理한다』가 단 9 %인데 比하여 『반반이다』 26 % 『不公正하다』 13 %로서 젊은層에서는 警察을 不信하고 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反面 50代以上에서는 『公正하다』가 26 % 『반반이다』가 26 %, 『不公正하다』가 6 %로서 어느程度 警察을 信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2. 學歷別 分類 (2 - 3 - 2)

無學인 境遇는 全的으로 『公正하다』고 보는데 (79 %) 反하여 學歷이 높을수록 正反對의 現象이 나타나고 있음은 당연한 結果라 하겠다.

問：4. 物件을 잃어버렸던지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警察官에
申告합니까?

表：< 2 - 4 - 1 > 年 令 別 () 内%

内 容	区 分	綜 合	1. 20 代	2. 30 代	3. 40 代	4. 50 代 以上
1. 警察官署에 꼭 申告한다.		113(22)	12(10)	16(31)	60(23)	25(25)
2. 申告할때도있고 안할때도있다.		350(66)	78(68)	27(52)	176(67)	69(70)
3. 申告하지 않는다.		65(12)	25(22)	9(17)	26(10)	5(5)
計		528	115	52	262	99

表：< 2 - 4 - 2 > 学 歷 別 () 内%

内 容	区 分	綜 合	1. 無 学	2. 国 卒	3. 中高卒	4. 大 卒 以上
1. 警察官署에 꼭 申告한다.		113(22)	5(36)	22(23)	67(23)	19(15)
2. 申告할때도있고 안할때도있다.		350(66)	7(50)	67(72)	198(67)	78(63)
3. 申告하지 않는다.		65(12)	2(14)	5(5)	30(10)	28(22)
計		528	14	94	295	125

表：< 2 - 4 - 3 > 職 業 別 () 内%

内 容	区 分	綜 合	1. 農 業	2. 水産業	3. 商 業	4. 公務員 会社社員
1. 警察官署에 꼭 申告한다.		113(22)	36(21)	5(19)	41(24)	31(20)
2. 申告할때도있고 안할때도있다.		350(66)	110(64)	17(62)	116(67)	107(68)
3. 申告하지 않는다.		65(12)	25(15)	5(19)	16(9)	19(12)
計		528	171	27	173	157

住民들의 억울한 被害를 입었을때 警察官에게 申告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警察官을 信賴하고 있는가 不信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把握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物件을 잃어 버렸던지 억울한 被害를 입었을때 住民들은 『警察官署에 꼭 申告한다』는 境遇는 不過 22%에 不過하고 『申告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다』가 무려 66%나 되어 住民들은 被害를 입었다고 꼭 申告하는 것이 아니라 境遇에 따라 申告与否가 決定되는 것은 그만큼 警察을 信賴할 수 없다는 結果라 하겠다. 더군다나 『申告하지 않는다』도 12%나 되는것은 警察官을 얼마나 不信해야 억울한 被害를 입어도 申告마저 안하겠는가를 생각할때 警察行政의 앞날이 암담하다 하겠다.

1. 年令別 分類 (表 - 2 - 4 - 1)

『꼭 申告한다』(22%)의 境遇와 『申告하지 않는다』(12%)의 境遇를 比較하여 보면 20代에서는 10%對22%로 申告하지 않은 境遇가 倍以上인데 反하여 30代에서는 31%對17%, 40代에서는 23%對10%, 50代以上에서도 25%對5%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申告하는 率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수있다.

2. 學歷別 分類 (表 2 - 4 - 2)

『꼭 申告한다』(22%)의 境遇와 『申告하지 않는다』(12%)의 境遇를 比較하여 보면 無學의 境遇는 36%對14%, 國卒이 境遇는 23%對5% 中, 高卒이 境遇는 23%對10%로 學歷이 알을수록 申告를 잘하나 大卒以上の 境遇는 正反對로 15%對22%

로 나타나 學歷이 높을수록 申告하지 않는다는 結果를 보여준다.

問：5. 申告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表：〈2-5-1〉 年 令 別 () 内%

内 容 \ 区 分	綜 合	1. 20代	2. 30代	3. 40代	4. 50代以上
1. 申告해 봤자 被害復旧가 될것 같지 않아서	262(50)	65(57)	22(42)	126(48)	49(50)
2. 申告하면 오라가라 귀찮게해서	241(46)	46(40)	26(50)	124(47)	45(45)
3. 報復이 두려워서	25(4)	4(3)	4(8)	12(5)	5(5)
計	528	115	52	262	99

表：〈2-5-2〉 學 歷 別 () 内%

内 容 \ 区 分	綜 合	1. 無 學	2. 國 卒	3. 中,高 卒	4. 大卒以上
1. 申告해 봤자 被害復旧가 될것 같지 않아서	262(50)	8(57)	43(46)	151(52)	62(50)
2. 申告하면 오라가라 귀찮게해서	241(46)	4(29)	42(44)	134(45)	59(47)
3. 報復이 두려워서	25(4)	2(14)	9(10)	10(3)	4(3)
計	528	14	94	295	125

表 : (2 - 5 - 3)

職 業 別

() 内 %

内 容 \ 区 分	綜 合	1 . 農 業	2 . 水 産 業	3 . 商 業	4 . 公 務 員
1 . 申告해 봤자 被害復旧가 될 것 같지 않아서	262(50)	83(48)	16(59)	77(44)	86(55)
2 . 申告하면 오라가라 귀찮게 해서	241(46)	78(46)	11(41)	88(51)	64(41)
3 . 報復이 두려워서	25(4)	10(6)	()	8(5)	7(4)
計	528	171	27	173	157

이번에는 前問에서 보여준 바와같이 大部分이 申告하지 않은데 申告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억울한 被害를 입어도 申告하지 않은다면 그 이유는 어디있다고 보는지? 『申告해 봤자 被害復旧가 될 것 같지 않아서』가 50 % 『申告하면 오라가라 귀찮게 해서』가 46 %로 나타나고 있는바 警察業務 遂行上 申告한 被害를 完全解決 復旧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마는 『오라가라 귀찮게 해서』 申告하지 않은境遇가 46 %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重大한 問題라 하겠다

이러한 問題의 解決을 위해서는 警察의 住民의 信賴를 獲得하기란 매우 重要하다 하겠다.

1. 年令別 分類 (表 2 - 5 - 1)

被害를 申告하지 않은 이유가 20代에서는 『被害復旧가 될 것 같지 않아서』로 나타나고 (57 %), 30代에서는 『오라가라 귀찮

아서』로 나타나고 (50 %) 있는外에 별다른 特徵이 없다.

2. 學歷別 分類 (表 2 - 5 - 2)

被害를 申告하지 않은 이유가 無學의 境遇는 『報復이 두려워서』로 나타나고 (14 %), 大卒以上の 境遇는『오라가라 귀찮아서』 (47 %) 申告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職業別 分類 (表 2 - 5 - 3)

被害를 申告하지 않은 이유가 商業에 從事하는 사람은『오라가라 귀찮게 해서』 (51 %) 申告하지 않고 水産業이나 公務員, 社員等은 『被害復旧가 될것같지 않아서』 (59 % , 55 %) 申告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問 : 6. 사람들의 警察官을 싫어하고 경원시하는 이유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

表 : < 2 - 6 - 1 >

年 令 別

() 内 %

内 容 \ 区 分	綜 合	1 . 20 代	2 . 30 代	3 . 40 代	4 . 50代 以上
1 . 남의 잘못하는것만 取扱 하 니까	79(15)	12(10)	9(17)	40(15)	18(18)
2 . 罪없는 사람을 罪人取扱하는 境遇가 많기 때문에	128(24)	15(13)	14(30)	78(30)	21(21)
3 . 言語나 態度가 거칠고 不친 절 하기 때문에	229(43)	65(56)	22(42)	111(42)	31(31)
4 . 業務処理를 公正히 하지않고 차별대우를 하기 때문에	92(17)	23(21)	7(11)	33(13)	29(30)
計	528	115	52	262	99

表：〈2-6-2〉

学 歴 別

() 内%

内 容 \ 区 分	綜 合	1. 無 学	2. 国 卒	3. 中, 高 卒	4. 大 卒 以上
1. 남의 잘못하는 것만取扱하니까	79(15)	5(36)	9(9)	49(7)	16(13)
2. 罪없는 사람을 罪人取扱하는 境遇가 많기 때문에	128(24)	3(22)	31(33)	72(24)	22(18)
3. 言語나 態度가 거칠고 不친절 하기 때문에	229(43)	3(22)	29(31)	128(43)	69(55)
4. 業務處理를 公正히 하지않고 차별 대우를 하기 때문에	92(18)	3(20)	25(27)	46(26)	18(14)
計	528	14	94	295	125

表：〈2-6-3〉

職 業 別

() 内%

内 容 \ 区 分	綜 合	1. 農 業	2. 水産業	3. 商 業	4. 公務員 会社員
1. 남의 잘못하는 것만取扱하니까	79(15)	24(14)	1(3)	30(17)	24(15)
2. 罪없는 사람을 罪人取扱하는 境遇가 많기 때문에	128(24)	46(27)	7(26)	40(23)	35(22)
3. 言語나 態度가 거칠고 不친절 하기 때문에	229(43)	65(38)	14(52)	72(42)	78(50)
4. 業務處理를 公正히 하지않고 차별 대우를 하기 때문에	92(17)	36(21)	5(19)	31(18)	20(13)
計	528	171	27	173	157

前節 問 6 에서 警察이라는 職業이 인기가 없음을 보았다. 警察이 住民들로 부터 信賴를 獲得하기 위해서는 警察官을 왜 싫어하고 不信하고 경원시 하는지를 正確히 把握할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警察官을 싫어하고 경원시 하는 이유를 調査해 본 結果

첫째 『言語나 態度가 거칠고 不친절하기 때문에』 43 %

둘째 『罪없는 者를 罪人取扱하는 境遇가 많기 때문에』 24 %

세째 『業務處理를 公正히 하지않고 차별대우를 하기 때문에』
17 %

네째 『남의 잘못하는 것만 取扱하니까』 15 % 順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警察官 자신의 是正 可能한 事項인 첫째 問題때문에 住民들로 부터 미움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더군다나 둘째問題와 세째問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할 問題라 여겨지며 이러한 점에서 警察行政의 改善方向을 찾아야 할것이다.

1. 年令別 分類 (表 2 - 6 - 1)

警察官을 싫어하는 이유가 20代에서는 『言語나 態度가 不친절하기 때문에』 (56 %), 30,40代에서는 『罪없는 사람을 罪人取扱하는 境遇가 많기 때문에』 (30 %), 50代以上에서는 『차별대우하기 때문에』 (30 %)에 各各 特徵을 보여주고 있는바 젊은層에서는 警察官들의 業務處理 狀態의 形式 (外型) 때문에 싫어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外型보다도 業務處理의 内容때문에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學歷別 分類 (表 2 - 6 - 2)

學歷이 높을수록 警察官들의 業務處理의 形式 (外型) 때문에 싫어하고 學歷이 낮을수록 業務處理의 內容 때문에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學歷이 높을수록 人格의 尊重을 바라고 있는 結果라 하겠다.

問 : 7. 警察官이 國民으로 부터 信賴를 얻으려면 ?

表 : < 2 - 7 - 1 >

年 令 別

() 內 %

區 分 內 容	綜 合	1 . 20 代	2 . 30 代	3 . 40 代	4 . 50 代 以上
1. 民弊를 없애고 不条理를 除去하여야 한다.	103(20)	28(24)	12(23)	52(20)	11(11)
2. 法을 法대로 公正하게 處理하여야 한다.	152(29)	23(21)	17(33)	81(30)	31(31)
3. 各種 犯罪를 迅速하고 시원하게 處理하여야 한다.	72(13)	13(11)	3(6)	33(13)	23(24)
4. 國民에게 친절히 奉仕하여야 한다.	142(27)	36(31)	13(25)	73(28)	20(20)
5. 警察官이 教養을 높여야 한다.	52(10)	13(11)	7(13)	19(7)	13(13)
6. 其 他	7(1)	2(2)	()	4(2)	1(1)
計	528	115	52	262	99

表: < 2 - 7 - 2 >

學 歷 別

() 内 %

内 容	区 分	綜 合	1. 無 學	2. 國 卒	3. 中, 高 卒	4. 大 卒 以上
1. 民弊를 없애고 不条理를 除去하여야 한다.		103(20)	3(21)	13(14)	57(19)	30(24)
2. 法을 法대로 公正하게 處理하여야 한다.		152(29)	2(15)	43(46)	85(29)	22(18)
3. 各種 犯罪를 迅速하고 시원하게 處理하여야 한다.		72(13)	3(21)	14(15)	39(13)	16(13)
4. 國民에게 친절히 奉仕하여야 한다.		142(27)	2(15)	19(20)	80(27)	41(32)
5. 警察官이 敎養을 높여야 한다.		52(10)	3(21)	4(4)	29(10)	16(13)
6. 其 他		7(1)	1(7)	1(1)	5(2)	()
計		528	14	94	295	125

表: < 2 - 7 - 3 >

職 業 別

() 内 %

内 容	区 分	綜 合	1. 農 業	2. 水産業	3. 商 業	4. 公務員 社會
1. 民弊를 없애고 不条理를 除去하여야 한다.		103(20)	34(20)	6(22)	29(17)	34(22)
2. 法을 法대로 公正하게 處理하여야 한다.		152(29)	59(35)	7(26)	56(32)	30(19)
3. 各種 犯罪를 迅速하고 시원하게 處理하여야 한다.		72(13)	24(14)	5(19)	25(14)	18(11)
4. 國民에게 친절히 奉仕하여야 한다.		142(27)	36(21)	6(22)	44(25)	56(36)
5. 警察官이 敎養을 높여야 한다.		52(10)	16(9)	3(11)	17(10)	16(10)
6. 其 他		7(1)	2(1)	()	2(2)	3(2)
計		528	171	27	173	157

以上에서 (問 1 ~ 6) 본바와같이 住民들은 警察官을 大部分 不信하고 敬遠視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시정하여 住民들의 信賴를 獲得할 수 있을까 하는 問題에 着目하게 된다. 그러면 住民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即 警察官들의 住民들로 부터 信賴를 얻으려면?

첫째 『法을 法대로 公正하게 處理하여야 한다』 29%

둘째 『國民들에게 친절히 奉仕하여야 한다』 27%

셋째 『民弊를 없애고 不条理를 除去하여야 한다』 20%

넷째 『各種 犯罪를 迅速하게 處理하여야 한다』 13%

다섯째 『警察官의 教養을 높여야 한다』 10%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現象은 警察行政 改善發展에 매우 重要한 要素들이라 하겠다.

1. 年令別 分類 (表 2 - 7 - 1)

警察官의 信賴를 얻으려면 20代에서는 『親切奉仕』(31%) 『不条理 除去』(24%)에 重点을 두고 있으며 30, 40代에서는 『公正處理』(33%, 30%), 『親切奉仕』(25%, 28%)에 重点을 두고 있으며, 50代以上에서는 『公正處理』(31%), 『迅速處理』(24%)에 各各 重点을 두고 있음이 特徵이라 하겠다.

2. 學歷別 分類 (表 2 - 7 - 2)

警察官들의 信賴를 얻으려면 中, 高卒以下 學歷이 낮은層에서는 『公正處理』에 重点을 두고 있으나 大卒以上 學歷이 높을수록

『親切奉仕』(32 %), 『不条理除去』(24 %)에 重点을 두고있어
年令別 分類에서 본바와같이 20代로서 大卒以上の 學歷을 가진
者들은 『親切奉仕』 『不条理除去』로 信賴를 獲得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職業別 分類 (表 2 - 7 - 3)

警察官들의 信賴를 얻으려면 農業, 水産業, 商業에 從事하는
者들은 첫째 『公正処理』 다음으로 『親切奉仕』함으로서 信賴를
獲得하여야 한다고 보고, 公務員, 会社員들은 첫째 『親切奉仕』
(36 %) 다음으로 『不条理除去』(22 %)로서 信賴를 獲得하여
야 한다고 보고있다.

第 3 節 親 近 度 및 協 助 度

前節에서는 警察에 對한 住民들의 信賴度를 여러 가지 角度에서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問題와 關聯하여 住民들은 警察에 對해서 어
느程度의 親近感을 느끼고 있는지 또한 警察業務에 對하여 어느
程度 協助할 意思가 있는지 하는것을 把握하므로써 警察行政의 改
善發展에 기여하는 重要な 役割을 擔當할 것으로 보아진다.

行政이 效果的인 目標達成을 期하기 爲해서는 住民의 積極的인
協助없이 는 이루어질 수 없는것이고, 協助의 誘導는 行政에 對한
理解促求와 親密感 造成없이 는 不可能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重
要한 問題라 하겠다.

問：1. 警察官을 대할때 대체로 어떻다고 봅니까?

表：〈3-1-1〉

年 令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20 代	2. 30 代	3. 40 代	4. 50 代 以上
1. 親切하다.	63(11)	9(8)	8(15)	33(13)	13(13)
2. 不親切하다.	157(30)	44(38)	8(35)	57(26)	28(28)
3. 普通이다.	284(54)	55(48)	23(44)	133(58)	53(54)
4. 무섭다.	24(5)	7(6)	3(6)	9(3)	5(5)
計	528	115	52	262	99

表：〈3-1-2〉

学 歷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無 学	2. 国 卒	3. 中.高卒	4. 大卒 以上
1. 親切하다.	63(11)	3(21)	15(16)	39(13)	6(5)
2. 不親切하다.	157(30)	3(21)	24(26)	79(27)	51(41)
3. 普通이다.	284(54)	5(37)	52(55)	164(56)	63(50)
4. 무섭다.	24(5)	3(21)	3(3)	13(4)	5(4)
計	528	14	94	295	125

表：〈3-1-3〉

職 業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農 業	2. 水産業	3. 商 業	4. 公務員 会社員
1. 親切하다.	63(11)	23(14)	6(21)	20(12)	14(9)
2. 不親切하다.	157(30)	46(27)	11(38)	55(31)	45(28)
3. 普通이다.	284(54)	93(54)	10(34)	88(51)	95(61)
4. 무섭다.	24(5)	9(5)	2(7)	10(4)	3(2)
計	528	171	29	173	157

警察의 對民關係에 있어서 住民들의 特別한 業務와 關聯없이 警察官을 對할때 어떻게 느끼느냐는 問題는 警察官과 一般住民과의 거리(親密度)를 測定하는 尺度가 될것이다. 따라서 警察官들을 對할때 느끼는 程度는?

『親切하다』고 느끼는 境遇는 不過 11%程度인데 反하여 『不親切하다』고 느끼는 境遇가 30%이고 『普通이다』고 보는 境遇가 54%나 되는바 警察業務를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警察官들이 住民에게 親切하게 보이지는 못할망정 不親切하게 보여서(30%)야 되겠는가 따라서 住民들의 警察官의 態度가 不親切하게 느끼고 있는限 警察行政의 目標達成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제약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1. 年令別 分類(表 3 - 1 - 1)

警察官을 對할때 느끼는 程度는 年令이 若い 階層일수록 『不親切』하게 느끼고 있고(20代는 38%, 30代는 35%) 年令이 많은 階層일수록 『普通』으로 느끼고 있다.

(40代는 58%, 50代以上은 54%), 이는 警察官들의 젊은 層에 對하여 과격한 言行이나 非人格的인 대우에서 오는 結果라 하겠다.

2. 學歷別 分類(表 3 - 1 - 2)

警察官을 對할때 大卒以上 學歷을 가진 者들은 『不親切』

하게 느끼고 (41 %), 그以下の學歷을 가진 者들은 『普通』으로 느끼고 있다.

3. 職業別 分類 (表 3 - 1 - 3)

警察官을 對할때 水産業이나 商業에 從事하는 者는 『不親切』하게 느끼고 (38 %, 31 %) 그以外에는 『普通』으로 느끼고 있다.

問 : 2. 사람들이 警察官署에 불 일이 있어 찾아갔을때 어떤 느낌을 받는다고 봅니까 ?

表 : < 3 - 2 - 1 > 年 令 別 () 内 %

内 容	區 分	綜 合	1. 20代	2. 30代	3. 40代	4. 50代以上
1. 매우親切하여 기분이 좋다.		36(7)	8(7)	2(4)	19(7)	7(7)
2. 만족할수는 없으나 좀 나아졌다.		199(38)	35(30)	18(36)	104(40)	42(42)
3. 普通이다.		202(38)	40(35)	24(46)	106(40)	32(32)
4. 不親切하여 기분이 나쁘다		91(17)	32(28)	8(15)	33(13)	16(19)
計		528	115	52	262	99

表 : < 3 - 2 - 2 >

学 歴 別

() 内%

内 容 \ 区 分	綜 合	1 . 無 学	2 . 国 卒	3 . 中,高卒	4 . 大 卒
1 . 매우 親切하여 기분이 좋다 .	36(7)	1(7)	10(11)	22(7)	3(2)
2 . 만족할수는 없으나 좀 나아졌다 .	199(38)	9(65)	31(32)	118(40)	41(33)
3 . 普通이다 .	202(38)	2(14)	40(43)	114(39)	46(37)
4 . 不親切하여 기분이 나 쁘다 .	91(17)	2(14)	13(14)	41(14)	35(28)
計	528	14	94	295	125

表 : < 3 - 2 - 3 >

職 業 別

() 内%

内 容 \ 区 分	綜 合	1 . 農 業	2 . 水産業	3 . 商 業	4 . 公務員 会社員
1 . 매우 親切하여 기분이 좋다 .	36(7)	14(8)	()	13(8)	9(6)
2 . 만족할수는 없으나 좀 나아졌다 .	199(38)	58(34)	11(41)	79(46)	51(32)
3 . 普通이다 .	262(38)	71(42)	10(37)	55(31)	66(42)
4 . 不親切하여 기분이 나 쁘다 .	91(17)	28(16)	6(22)	26(15)	31(20)
計	528	171	27	173	157

위問에서는 業務와 關聯없이 一般的으로 또는 觀念적으로 느끼는 狀況이었고 이번에도 業務와 關聯하여 警察官을 대할때의 느끼는 程度를 把握하기 위 한것으로서 近間에 警察行政은 對民關係 改善에 많은 努力을 경주하고 있어 이의 改善程度를 檢하여 把握하기 위 한 方法으로도 意義가 있다 하겠다.

警察官署에서 불일이 있어 찾아갔을때, 『만족할 수는 없으나 좀나아졌다』(38%)고 느끼고 있고, 아니면 『普通이다』(38%) 程度로 밖에 느끼지 못하고 있는 程度이며 『기분이 좋다』는 불과 7%程度인데 반하여 『不親切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무려 17%나 되고있어 對民關係 改善方法에 어딘가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1. 年令別 分類(表 3-2-1)

警察官署에 불일이 있어 찾아 갔을때 느끼는 程度는 20代에서는 『不親切하여 기분이 나쁘다』(28%)고 느끼고 있으나 30, 40代에서는『普通이다』(46%, 40%)고 느끼고 더 나아가서 50代以上에서는 오히려 『좀 나아졌다』(42%)고 느끼고 있음은 過去와 比較하여 볼때 많이나아진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職業別 分類(表 3-2-3)

警察官署에 불일이 있어 찾아갔을때 느끼는 程度는 農業에 從事하는者는 『보통이다』(42%)고 느끼는 반면 商業에 從事하는 者는 『좀 나아졌다』(46%)고 느끼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은

警察官과의 接觸의 程度에 따라 差異가 생기고 있다 하겠다.

問：3. 警察官이 쓰는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表：〈3-3-1〉 年 令 別 () 内%

内 容 \ 区 分	綜 合	1. 20代	2. 30代	3. 40代	4. 50代 以上
1. 곱고 부드러워 듣기 좋다.	28(5)	6(5)	6(12)	15(6)	1(1)
2. 보통때는 고운말씨를 쓰다가 도 公務를 遂行할때는 거친말 을 많이 쓴다.	302(57)	54(47)	25(48)	158(60)	65(66)
3. 말씨에는 別로 關心이 없다.	90(18)	16(14)	7(13)	48(18)	19(19)
4. 너무 거칠고 격하여 不快感 을 준다.	108(20)	39(34)	14(27)	41(16)	14(14)
計	528	115	52	262	99

表：〈3-3-2〉 学 歷 別 () 内%

内 容 \ 区 分	綜 合	1. 無 学	2. 国 卒	3. 中, 高卒	4. 大 卒 以上
1. 곱고 부드러워 듣기 좋다	28(5)	1(7)	4(4)	21(7)	2(2)
2. 보통때는 고운말씨를 쓰다가도 公務를 遂行할때는 거친말을 많 이 쓴다.	302(57)	6(43)	59(63)	169(57)	68(54)
3. 말씨에는 別로 關心이 없다	90(18)	6(43)	19(20)	49(17)	16(13)
4. 너무 거칠고 격하여 不快感 을 준다.	108(20)	1(7)	12(13)	56(19)	39(31)
計	528	14	94	295	125

表 : < 3 - 3 - 3 >

職 業 別

() 内%

内 容 \ 区 分	綜 合	1. 農 業	2. 水産業	3. 商 業	4. 公務員 会社員
1. 곱고 부드러워 듣기 좋다	28(5)	10(6)	1(4)	9(5)	8(5)
2. 보통때는 고운말을 쓰다가도 公務를 遂行할때는 거친말을 많이 쓴다.	302(57)	101(59)	12(44)	98(57)	91(58)
3. 말씨에는 別로 關心이 없다	90(18)	25(15)	6(22)	34(20)	25(16)
4. 너무 거칠고 격하여 不快感 을 준다.	108(20)	35(20)	8(30)	32(18)	33(21)
計	528	171	27	173	157

警察에 대한 親密感을 느끼지 못하는 理由, 아니면 警察에 대한 親密感을 어느程度 느끼고 있는지? 警察과의 日常 言語에서 찾아 보았다. 警察官의 쓰는 言語는 公務를 遂行하여 나가는 過程에서 그 目的達成에 매우 重要な 役割을 担当함은 말할것도 없고 行政上 對民關係 改善에도 重要的 役割을 한다.

그러면 警察官의 쓰는 言語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보통때는 고운말씨를 쓰다가도 公務를 遂行할때는 거친말을 많이 쓴다』가 57%나 차지하여 大部分이 公務遂行時는 『거친말』을 쓰고 있다고 느낄程度로 警察官의 言語도 아직 순화되지 않았다고 단적으로 말 할 수 있고 더군다나 말씨가 『너무 거칠고 격하여 不快感을 준다』가 20%나 차지할 程度까지 이르렀으니 警察에 대한 親密感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當然한 結果라 하겠다.

1. 年令別 分類 (表 3 - 3 - 1)

警察官의 쓰는 言語에 대하여 40, 50대에서는 大部分이 『보통때는 고운말씨를 쓰다가도 公務를 遂行할때는 거친말을 많이 쓴다』 (60%, 61%)고 느끼고 있으며 반면에 20, 30대에서는 『너무 거칠고 격하여 不快感을 준다』 (34%, 27%)고 느끼고 있다.

2. 學歷別 分類 (表 3 - 3 - 2)

警察官의 쓰는 言語에 대하여 無學의 境遇는 『別關心이 없다』 (43%)고 느끼고 있으며 國卒, 中. 高卒인 境遇도 『보통때는 고운말씨를 쓰다가도 公務를 遂行할때는 거친말을 많이 쓴다』 (63%, 57%)고 느끼는 반면, 大卒以上の 境遇는 『너무 거칠고 격하여 不快感을 준다』 (31%)고 느끼고 있다.

問: 4. 警察官의 容貌나 服裝 및 態度는 어떻다고 느꼈습니까?

表: < 3 - 4 - 1 > 年 令 別 () 内%

内 容	區 分	綜 合	1.	2.	3.	4.
			20代	30代	40代	50代以上
1. 의젓하고 멋뻐 보인다.		251(48)	40(35)	21(40)	134(51)	56(57)
2. 보통이다.		194(36)	52(45)	23(44)	91(34)	28(28)
3. 大部分 단정치 못하다.		22(4)	5(4)	3(6)	12(5)	2(2)
4. 別로 關心이 없다.		61(12)	18(16)	5(10)	25(10)	13(13)
計		528	115	52	262	99

表 : < 3 - 4 - 2 >

学 歷 別

() 内%

内 容 \ 区 分	綜 合	1. 無 学	2. 国 卒	3. 中, 高卒	4. 大 卒 以上
1. 의젓하고 몇몇이 보인다.	251(48)	12(86)	54(57)	150(51)	35(28)
2. 보통이다.	194(36)	()	29(32)	102(35)	63(51)
3. 大部分 端正치 못하다.	22(4)	()	5(5)	13(4)	4(3)
4. 別로 關心이 없다.	61(12)	2(14)	6(6)	30(10)	23(18)
計	528	14	94	295	125

表 : < 3 - 4 - 3 >

職 業 別

() 内%

内 容 \ 区 分	綜 合	1. 農 業	2. 水産業	3. 商 業	4. 公務員 会社員
1. 의젓하고 몇몇이 보인다	251(43)	94(55)	14(52)	75(43)	68(43)
2. 보통이다	194(36)	52(30)	9(33)	67(39)	66(42)
3. 大部分 端正치 못하다.	22(4)	8(5)	1(4)	7(4)	6(4)
4. 別로 關心이 없다	61(12)	17(10)	3(11)	24(14)	17(11)
計	528	171	27	173	157

本 問에서는 警察官의 容貌, 服裝 및 態度 即 警察官의 外貌에서 오는 親近感이 어느程度인가를 알아보려 한다. 警察官은 他公務員과 달리 制服勤務를 하는 境遇가 많고, 또한 現場에서 是正, 制止하여야 할일이 많기 때문에 外觀이 警察業務 遂行에 重要な 役割을 한다.

그러면 警察官의 容貌, 服裝 및 態度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의젓하고 멋뻐 보이네』가 48%, 『보통이다』가 36%, 『別關心이 없다』가 12%인데 『大部分 端正치 못하다』는 불과 4% 정도인바 이를 前問과 比較하여 보면, 警察官의 外貌는 의젓하고 멋뻐 보이는 반면 쓰는말은 거칠어 不快感을 줌으로 因하여 住民들로 부터 미움을 사고있다는 重大한 事實을 알게 되었다.

1. 年令別 分類 (表 3 - 4 - 1)

警察官의 外貌에 대하여 나이가 많은 계층일 수록 『의젓하고 멋뻐 보이네』 보이는 (40代 51%, 50代 57%) 반면 젊은계층일 수록 『보통』으로 밖에 보이지 (20代 45%, 30代 44%) 않고 있다

2. 學歷別 分類 (表 3 - 4 - 2)

警察官의 外貌에 대하여 中.高卒 以下 學歷이 낮은 계층에서는 『의젓하고 멋뻐하게』 보이는 반면 大卒以上 學歷이 높은 계층에서는 『보통』 (51%) 程度로밖에 안 보고 있다.

問: 5. 警察官署 앞을 지나갈때나 警察官을 만났을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表: < 3 - 5 - 1 >

年 令 別

() 内%

内 容	区 分	綜 合	1.	2.	3.	4.
			20代	30代	40代	50代以上
1. 팬히접이나고 가슴이두근 거린다		35(7)	9(8)	4(8)	13(5)	9(9)
2. 부르지나 않나 신경이 쓰인다		46(9)	21(18)	4(8)	14(5)	7(7)
3. 별다른 느낌이 없다.		339(64)	77(67)	35(67)	168(64)	59(60)
4. 오히려 안심이 된다		108(20)	8(7)	9(17)	67(26)	24(24)
計		528	115	52	262	99

表 : < 3 - 5 - 2 >

学 歴 別

() 内%

内 容 \ 区 分	綜 合	1. 無 学	2. 国 卒	3. 中, 高 卒	4. 大 卒 以 上
1. 괜히 겁이 나고 가슴이 두근 거린다.	35(7)	1(7)	8(9)	16(5)	10(8)
2. 부르지나 않나 신경이 쓰인 다.	46(9)	2(14)	5(5)	19(6)	20(16)
3. 별다른 느낌이 없다.	339(64)	6(43)	50(53)	196(67)	87(70)
4. 오히려 안심이 된다	108(20)	5(36)	31(33)	64(22)	8(6)
計	528	14	94	295	125

表 : < 3 - 5 - 3 >

職 業 別

() 内%

内 容 \ 区 分	綜 合	1. 農 業	2. 水 産 業	3. 商 業	4. 公 務 員 會 社 員
1. 괜히 겁이 나고 가슴이 두근 거린다.	35(7)	17(10)	0	9(5)	9(6)
2. 부르지나 않나 신경이 쓰인 다.	46(9)	15(9)	2(7)	16(9)	13(8)
3. 별다른 느낌이 없다.	339(64)	102(60)	16(60)	108(62)	113(72)
4. 오히려 안심이 된다.	108(20)	37(21)	9(33)	40(24)	22(14)
計	528	171	27	173	157

警察官에 대한 一般住民의 親密度를 알아보기 위하여 警察官이 住民에 대한 態度 (表 3 - 2) 와 言語 및 外貌를 알아보았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住民들의 警察官을 우연히 만났을때 어떠한 느

낌이 드는가를 알아 보았다.

그래서 警察官署 앞을 지나갈때나 우연히 警察官을 만났을때, 『별다른 느낌이 없다』가 64%나 차지하여 日帝時代에 올던 애들도 『순사』가 온다고 하면 울음을 그쳤다는 이야기는 한낱 神話에 不過하게 되었고 『오히려 안심이 된다』(20%)고 느낄 程度이며, 『겁이 난다』(7%) 『부르지나 않나 신경이 쓰인다』(9%)는 極少数에 不過하다. 지금까지 一般的으로 警察官은 두려운존재,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오던 時代는 確實히 지났다고 보아진다.

以下 年令別, 學歷別, 職業別 分類는 別다른 이의가 없어 略한다

問: 6. 警察官의 惠拂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니까?

表: < 3 - 6 - 1 > 年 令 別 () 内%

内 容 \ 区 分	綜 合	1. 20 代	2. 30 代	3. 40 代	4. 50 代 以上
1. 上流層에 있는 사람	202(38)	60(52)	22(42)	80(31)	40(40)
2. 一般庶民	125(23)	32(28)	15(29)	57(21)	21(21)
3. 社会 밑 바닥에 있는 사람	24(5)	4(3)	2(2)	13(5)	6(6)
4. 골고루 惠拂을 받는다.	177(34)	19(17)	14(27)	112(43)	32(33)
計	528	115	52	262	99

表: 3 - 6 - 2 >

学 歴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無 学	2. 国 卒	3. 中, 高卒	4. 大 卒 以 上
1. 上流層에 있는 사람	202(38)	2(14)	36(38)	110(37)	54(34)
2. 一般庶民	125(23)	4(29)	15(17)	73(25)	33(26)
3. 社会 밑바닥에 있는 사람	24(5)	1(7)	7(7)	11(4)	5(5)
4. 골고루 惠沢을 받는다.	177(34)	7(50)	36(38)	101(34)	33(26)
計	528	14	94	295	125

表: < 3 - 6 - 3 >

職 業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農 業	2. 水産業	3. 商 業	4. 公務員 会社社員
1. 上流層에 있는 사람	202(38)	63(37)	17(63)	59(34)	63(40)
2. 一般庶民	125(23)	33(19)	4(15)	47(27)	41(26)
3. 社会 밑바닥에 있는 사람	24(5)	13(8)	0	8(5)	3(2)
4. 골고루 惠沢을 받는다.	177(34)	62(36)	6(22)	59(34)	50(32)
計	528	171	27	173	157

警察業務에 대한 一般住民들의 協助心を 測定하기 위한 前提要素로서 警察官의 惠沢을 어느 階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을까 하는 問題를 調査해 보았다.

警察官의 惠沢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上流層에 있는 사람』(38%)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골고루』

루 惠 沢을 받는다』(34 %) 이고 『一般庶民』은 不過 23 % 밖에 안되는바, 一般住民들의 보는눈은 아직도 警察은 特權層, 上流層의 待女같이 느끼는 모양인데 다음에서 調査할 協助心の 発顯은 警察의 惠 沢에 대한 反對給付로서의 協助는 있을 수 없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警察의 惠 沢은 社会 各階層에 골고루 配分되어야 하겠고, 또한 住民들은 그렇게 느껴져야 참다운 行政이 이룩될 것이다.

1. 年令別 分類 (表 3 - 6 - 1)

警察의 惠 沢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20, 30 代에서는 『上流層에 있는 사람』(52 %, 42 %) 으로 보고있는 반면, 40 代에서는 『골고루 받고 있다』(43 %) 고 보고 있다. 그러나 50 代에서는 兩者가 別差異(40 % 代 33 %) 없이 보고 있다.

(學歷別, 職業別 分類는 特別한 意義가 없어 略함)

問 : 7. 貴下는 警察이 하는일에 대하여 어떤 態度를 취하십니까?

表 : < 3 - 7 - 1 > 年 令 別 () 内 %

区 分 内 容	綜 合	1. 20 代	2. 30 代	3. 40 代	4. 50 代 以 上
1. 積極 協助하고 있다	189(36)	25(22)	21(40)	109(42)	34(34)
2. 境遇에 따라서 協助한다.	294(56)	67(58)	26(50)	143(54)	58(59)
3. 마지못하여 協助한다.	22(4)	11(10)	4(8)	3(1)	4(4)
4. 協助할 必要를 느끼지 않는다	23(4)	12(10)	1(2)	7(3)	3(3)
計	528	115	52	262	99

表 < 3 - 7 - 2 >

学 歷 別

() 内%

内 容 \ 区 分	綜 合	1. 無 学	2. 国 卒	3. 中, 高 卒	4. 大 卒 以上
1. 積極 協助하고 있다.	189(36)	5(36)	39(42)	110(37)	35(27)
2. 境遇에 따라서 協助한다.	294(56)	9(64)	50(53)	168(57)	67(54)
3. 마지 못하여 協助한다.	22(4)	0	3(3)	7(2)	12(10)
4. 協助할 必要를 느끼지 않는다	23(4)	0	2(2)	10(4)	11(9)
計	528	14	94	295	125

表 : < 3 - 7 - 3 >

職 業 別

() 内%

内 容 \ 区 分	綜 合	1. 農 業	2. 水産業	3. 商 業	4. 公務員 会社員
1. 積極 協助하고 있다	189(36)	67(39)	10(37)	61(35)	51(32)
2. 境遇에 따라서 協助한다.	294(56)	89(52)	11(41)	99(57)	95(61)
3. 마지 못하여 協助한다.	22(4)	6(4)	2(7)	5(3)	9(6)
4. 協助할 必要를 느끼지 않는다	23(4)	9(5)	4(15)	8(5)	2(1)
計	528	171	27	173	157

警察業務는 大部分 一般住民의 協助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業務들이다. 例를들면 強力犯의 發生하였을 境遇 住民의 徹底한 申告없이는 所期 目的達成이 거의 不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一般住民의 警察業務에 대하여 어느程度 協助하고 있고, 協助할 意思가 있느냐는 問題는 警察行政 遂行에 決定的인 關鍵

이 된다 하겠다.

그러면 住民들의 警察業務에 대하여 어느程度 協助하고 있는가?
『積極協助하고 있다』가 36%, 『境遇에 따라 協助한다』가 56%
인바 警察業務라 해서 無條件 協助하는 것이 아니라 境遇에 따라서
協助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다는 態度인바(58%) 警
察業務의 信憑性を 높이고, 信賴를 獲得하여 警察業務라면 無條件
協助하겠끔 誘導하여야 할 것이다.

1. 年令別 分類(表 3 - 7 - 1)

警察業務에 대하여, 『積極協助』하는 境遇와 『境遇에 따라 協
助』하는 境遇가, 20代에서는 22%對 58%, 50代에서는 34%對
59%로 젊은층에서는 境遇에 따라 協助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반면 30代에서는 40%對 50%, 40代에서는 42%對 54%로
兩者의 間隔이 좁혀져 있는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2. 職業別 分類(表 3 - 7 - 3)

警察業務에 대하여, 『積極協助』하는 境遇와 『境遇에 따라 協
助』하는 境遇가 農業에 從事하는者는 39%對 52%로 前者에 強하
게 나타나는 반면, 公務員, 会社員 등 俸給生活者는 32%對 61%로
境遇에 따라 協助하는 쪽에 強하게 나타나고 있는점은 매우 대조
적이다.

問：8. 警察官이 시키는일에 대하여 国民은 어떤 態度를 취해야 한다고 思いますか？.

表：＜ 3 - 8 - 1 ＞ 年 令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20 代	2. 30 代	3. 40 代	4. 50 代 以上
1. 無条件 따라야 한다.	52(10)	6(5)	5(10)	32(12)	10(10)
2. 境遇에 따라서 따라야 한다	464(88)	101(88)	43(82)	231(88)	89(90)
3. 따를 必要가 없다.	12(2)	8(7)	4(8)	0	0
計	528	115	52	262	99

表：＜ 3 - 8 - 2 ＞ 学 歴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無 学	2. 国 卒	3. 中.高卒	4. 大 卒 以上
1. 無条件 따라야 한다.	52(10)	1(7)	9(10)	32(11)	10(8)
2. 境遇에 따라서 따라야 한다	464(88)	13(93)	83(88)	261(88)	107(86)
3. 따를 必要가 없다.	12(2)	0	2(2)	2(1)	6(6)
計	528	14	94	295	125

表：＜ 3 - 8 - 3 ＞ 職 業 別 () 内%

区 分 内 容	綜 合	1. 農 業	2. 水産業	3. 商 業	4. 公務員 会社員
1. 無条件 따라야 한다.	52(12)	17(10)	2(7)	18(10)	15(10)
2. 境遇에 따라서 따라야 한다	464(88)	151(88)	24(89)	154(89)	135(86)
3. 따를 必要가 없다	12(2)	3(2)	1(4)	1(1)	7(4)
計	528	171	27	173	157

前問 7 과 연관되는 事項으로서 警察官이 業務遂行中 住民에게 指示命令을 하였을 境遇나 어떠한 事項에 대하여 協助를 求하였을 境遇에 住民들의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하는 問題를 調査하여 보았다. 이 問題는 警察官의 對民意識과도 關聯되는 事項으로서 警察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한 必須的인 考慮事項이라 하겠다.

따라서 警察官의 시키는일에 대하여 住民들은 『無條件 따라야 한다』는 不過 10 %程度이고, 『境遇에 따라서 따라야 한다』가 88 %나 접하고 있음은 警察行政이라고 하여 一方的으로 命令, 強制만 가지고는 目的 達成이 困難하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以下 年令別, 學歷別, 職業別 分類는 特別한 意義를 찾지못하여 略한다.

第4章 問題点 및 改善方向

第3章에서 警察에 對한 濟州道民의 意識構造를 調査 分析하여 보았다. 이에 本章에서는 調査分析結果 나타난 問題点을 도출하고 그 問題点에 對하여 改善方向을 提示하므로서 警察行政 發展에 이바지 하고져 한다.

第1節 問題点

1. 警察의 惠拂을 입는사람은 上流層에 편중되어 있다 (表 3 - 6)

우리나라의 警察制度는 民主警察를 指向하는데도 警察의 惠拂을 입는者는 『上流層에 있는사람』에 편중 (38 %) 되어 있다고 믿고있고 『골고루 惠拂을 받는다』는 것은 불과 34 %程度인바 골고루 惠拂을 주지 못할바엔 차라리 『一般庶民』 (23 %) 에게 가장많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住民들은 억울한 被害를 입었을때도 警察에 잘 申告하지 않고 있다. (表 2 - 4 , 2 - 5)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고 社会安寧 秩序를 維持하는 것이 警察의 任務일진데 住民들의 不當한 侵害나 被害를 입었을때 당연히 警察에 申告하여야 할것인데도 『꼭 申告한다』는 境遇는 不過 22 %에 不過하고, 境遇에 따라『申告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다』는 境遇가 무려 66 %로서 申告하는 問題가 몹시 複雜적인바

그 理由는 『被害復旧가 될것같지 않아서』 申告하지 않는 境遇가 60 %나 되는데 이는 韓國的 現實로 미루어보아 그런 데로 이해가 가나 申告할 境遇 『오라가라 귀찮아서』 申告하지 않을 境遇가 무려 46 %나 되고 이도 30代에서 (50 %), 識者層에서 (大卒 47 %)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다.

3. 事件處理와 團束은 情實에 홀려 不公正하게 處理하고 있다.

(表 2 - 3)

警察官은 모든 業務를 公明正大하게 處理하여야 하는데도 아직 까지도 『公正하게 處理』 (23 %) 하는 境遇보다는 『가끔 情實에 홀려 不公正하게 處理』 (50 %) 하는 境遇가 훨씬 많이 느끼고 있음은 重大한 問題라 아니 할 수 없다. 더군다나 不公正하게 處理하고 있다고 보는 階層은 20代 (52 %) 大卒以上者 (50 %), 商業에 從事하는 者 (55 %)로서 더욱더 重要視 하여야 하겠다.

4. 警察官이 하는일에 대하여 住民들은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

(表 2 - 1)

警察의 對象이 되는 事項은 住民에게 利益을 주는 (給付) 것이 아니고 自由를 制限 (侵害) 하는 事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警察官이 하는일에 대하여 『전적으로 믿을 수 있』 (14 %) 어도 이렇하기 힘들 텐데도 『 대체로 믿을만 하다』 (40 %), 아니면 『普通이다』 (40 %) 程度이면 警察權 行使에 많은 制約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5. 警察官들도 다른 公務員과 마찬가지로 不正하고있다 (表2-2)

警察官은 不正, 不条理 除去와 庶政刷新 業務에 대하여도 他 公務員의 儀表가 되어야할 位置에 있는데도 不拘하고 아직도 『不正이 많다』가 24%이고, 『不正이 적다』12%, 『청렴하다』12%로서 他公務員보다 조금도 向上되지 않게 보고있는한 이 問題의 是正도 요원하다 하겠다.

6. 支派出所 運營費가 모자라서 얻어 쓰고 있다. (表1-4)

支派出所 運營費가 現實化 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國家豫算만으론 모자라서 『유지로 부터』(29%), 『警察対象 業者로 부터』(13%), 『事件과 關聯하여』(10%), 各各 얻어쓰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는 다시말하여 支派出所를 運營하기 위하여 不正, 不条理가 지금도 恣行되고 있다는 問題와도 같은 것이다.

7. 警察官은 業務를 處理하는데 있어서 意慾이 없어보인다 (表1-8)

어떠한 組織이던 組織目標를 效果的으로 達成하기 위해서는 組織員 全体의 士氣, 即 意慾的인 業務處理가 必要한데도 警察官들의 業務處理하는 모습은 『마지못하여 하는것 같은 인상』(20%)으로 보일 程度면 警察目標 達成은 매우 至難하다고 보겠다.

8. 警察官의 쓰는 言語는 거칠고 격하여 불쾌감을 준다 (表3-3)

警察官들의 쓰는 言語는 『普通때는 고운말씨를 쓰다가도 公務를 遂行할때는 거친말을 많이』(57%) 써서 住民들의 好感을 못받고 있고, 더군다나 어떠한 境遇에는 『너무 거칠고 격하여 不快

感을 주』는 境遇도 (20 %) 있다.

9. 警察官들은 대체로 不親切하다. (表 3 - 1, 3 - 2)

住民들의 特別한 業務關係없이 警察官을 대할때도 『不親切하게』 (30 %) 느끼고 기껏 하여야 『普通』 (54 %) 으로 느낄 程度이고 『親切』하게 느끼는 境遇는 극히 드물다. (11 %), 더군다나 警察官署에 불일이 있어 찾아갔을 境遇도 『不親切하여』 기분이 나쁜程度 (17 %) 이니 警察官의 親切問題로 매우심각하다 하겠다.

10. 警察官의 시키는 일이라고 하여 住民들이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 (表 3 - 8)

警察官이 業務遂行을 위하여 住民들에게 命令 強制할 境遇에도 住民들은 『무조건 따르』 (10 %) 는 것이 아니라 그 命令 強制가 妥當한지의 与否를 가려서 即 境遇에 따라『따라야 한다』 (88 %) 고 느끼고 있다.

11. 警察官의 하는일이라고하여 무조건 協助하는 것은 아니다.

(表 3 - 7)

警察이 하는일 即 国家作用으로서의 警察業務遂行에 대하여 住民들은 무조건『積極協助』 (36 %) 하는것이 아니라 그 業務의 内容과 境遇에 따라 協助할 境遇도 있고 안할 境遇도 있다 (56 %) 고 批評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다.

다시말하여 警察이라고 하여 어떠한 일이든지 命令, 強制로서만은 이를 수 없고 内容과 方法이 妥當하여야만 住民의 協助를 얻을수

있다 하겠다.

12. 職業으로서의 警察官을 大部分 싫어한다. (表 1-6, 1-7)

職業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住民들은 警察官이 되고 싶지 않고 (55%), 어려운 사정에 처하여 있을때 마지못하여 警察官을 扞할 수 도 있을 (40%) 程度로 인기가 없는 職業이다. 그러면 왜 警察을 싫어할까 그 理由는 첫째 警察은 『罪人을 다루는 일을 하니까』 (45%) 싫어한다고 하는바 警察機能 自体가 남의 잘못만을 탓하는 반면 남에게 도움을 주는일이 아니기 때문이며, 둘째 『다른 職業보다 보람이 없어서』 (29%) 싫어하는바, 이는 公務員으로서서의 보람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승진”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보람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解 釈된다.

13. 住民들의 가장 싫어하는 警察官은 交通警察官 搜查刑事등이다.

(表 1-5)

理由야 어떻게 住民들의 싫어하는 順序는 交通警察官 (24%) 搜查刑事 (20%) 支派出所職員 (19%), 保安警察 (10%), 情報警察 (10%)의 順으로 된다.

다만 『交通警察』은 20代 (29%)와 商業에 從事하는者 (29%)가 싫어하는 반면에 『搜查刑事』는 40代 (23%)와 公務員, 社員 등 俸給生活者 (24%)가 싫어하고 있다.

14. 警察業務中에서 犯罪搜查業務를 가장 重要視하고 있다. (表 1-1)

警察은 여러가지 機能을 担当하고 있으나 그 中에서도 大部分

(50 %) 이 犯罪 搜查業務를 重要視 하고 있고, 그것도 30代 (58 %) 와 大卒以上 (57 %) 에서 더욱더 重要視하고 있다.

15. 警察官이 處理하는 業務量은 너무 過重하다 (表 1 - 2)

警察官들은 現在 日日平均 12 ~ 18 時間 勤務를 하고있다고 한다. 그런데 住民의 보는 눈은 『너무過重하다』가 31 %, (多小過重하다) 가 34 %로서 대개가 過重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過重한 것은 事實이다. 이러한 業務量의 過重때문에 業務處理가 疎忽히 다루어 지지않을가 염려된다.

16. 警察官은 다른 公務員에 比하여 教養이 갖추어 있지않다

(表 1 - 3)

警察官은 住民에게 直接 命令, 強制하여 自然的 自由를 制限 拘束하는 業務를 處理하여야 하므로 他公務員보다도 教養과 人格이 갖추어져야 하는데도 오히려 『普通』(43 %) 또는 『普通以下』(26 %) 로 보고 있다. 그것도 20代 (77 %) 의 젊은층에서, 大卒以上 (81 %) 知識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重要な 問題라 하겠다.

以上에서 열거한 問題點을 綜合해 보면,

첫째, 警察을 信賴할 수 없다.

警察權이 行使는 가장 公平無私하게 住民을 爲해서 行하여져야 하는데도 아직도 業務處理를 情實에 흘러 不公平하게 處理하고, 上 階層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惠拂을 주고있어서 警察이 하는일은 민

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억울한 被害를 입어도 申告하지 않을
程度로 警察을 不信하고 있다는 点이다.

둘째, 警察을 理解하지 못하고 있다.

近間에 와서 政府의 庶政刷新 施策에 立脚하여 警察内部에서도
不正, 不条理를 과감히 除去하고 있는데도 住民들은 先入感에서 警
察官署 運營費를 住民들로 부터 얻어쓰는 程度로 不正을 恣行하고
있다고 믿고있고 他公務員에 比하여 教養程度도 낮게 보고 있는등
警察을 제대로 理解하지 못하고 있다.

세째, 警察官에 對한 親近感을 느낄수 없다.

警察官들의 쓰는 말은 거칠고 격하여 不快感을 주며, 態度가
不親切하여 親近感을 느낄수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現象
下에서는 警察業務에 대한 住民의 協助를 얻기위한 至難한 일이라
하겠다.

第 2 節 改 善 方 向

앞에서 추출한 問題點에 대하여 對外的인 面과 對內的인 面에서
그 改善方向을 찾아 보고져 한다.

優先 對外的인 面에서는 먼저 對民關係의 改善으로서 警察에 對
한 理解를 促求시키고 둘째 對民奉仕를 公正하고 親切히 하므로써
住民의 信賴를 얻어야 하며 다음으로 對內的인 面에서는

첫째 警察官 自身の 能力發展은 勿論 發展志向的인 公務員像을

定立하고, 둘째 警察官의 士氣昂揚으로 業務能率을 向上시킴으로서 問題點을 解決하여야 한다.

1. 對民關係의 改善

警察에 對하여 不信, 沒理解 및 敬遠視하는 것은 對民關係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惹起된 結果라 하겠다.

모든行政이 그러하듯이 警察行政도 “秘密”만을 앞세워 언제까지나 閉鎖為主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住民에게 開放하여 住民들로 하여금 警察業務가 어떤것이고 왜 그렇게 하지않으면 안되는가등 業務 全般에 걸쳐 잘 理解시키므로서 “善意의協力”關係를 維持하여야 할것이다.

이제 警察官 自身은 歷史的 產物인 官僚的 支配根性を 버리고 行政 目的을 效果의으로 達成하기 위해서 참다운 對民關係 維持에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對民關係에 있어서 具體的인 事項을 例示하면 警察 對象이 되는 事項에 대하여서는 그 制限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自己自身の 잘못을 뉘우치고 어쩔 수 없이 제재를 받는것이 當然하다고 느끼게끔 理解시키고, 警察에 對하여 要求事項, 請願事項에 對하여 거절할 境遇에도 위와 같이 理解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할 境遇에는 恒常 警察을 怨望하고 不信하고 蔑視하는 結果만 發生한다

2. 親切奉仕 勵行

警察官은『全体 國民의 奉仕者』인데도 이를 忘却하고 業務處理

過程에서 不公正하게 處理하고 特權層에 아부 편과處理하는 境遇는 勿論, 言語, 態度가 불손하여 住民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警察官이 住民들로 부터 不信을 받는 주된 原因이 差別대우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對民關係를 公平無私하게 또 庶民大衆의 편에서 모든 業務를 處理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警察官의 言語 態度인바 言語는 事務室에서 쓰는 電話나 問議事項에 對한 對答 또는 指示 要求時에 쓰는 말이 거칠고 격하여 不快感을 주고 있는데 對하여 깊은 關心을 가지고 『부드러운』 『고운』 『듣기 좋은』말을 골라 쓰므로써 住民의 好感, 親密感을 찾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警察官은 特權意識을 가지고 住民들에게 군림하는 姿勢때문에 지탄의 對象이 되어온것이 事實이므로 住民을 대할때는 겸손하고 眞摯한 態度로 臨하여야 住民들도 警察에 對한 親密感을 느껴 協助 하겠다는 마음의 우러날 것이고 그렇게 되므로써만이 警察의 目的達成이 容易하리라 믿는다.

3. 能力 發展

警察業務의 性質上 이를 遂行하는 警察官은 他公務員 보다도 높은 知識과 教養이 要求된다. 그래서 採用할적에도 이런 點에 充分히 考慮하여 選拔하였으나 (一般職은 學力制限의 없었으나 警察官은 高卒以上으로 限定) 나 날이 變貌하여가는 社會 現實에 適應할 만큼 能力이 發展되지 못하여 警察業務 遂行에 障礙가 많이 發生하였음이 事實이다. 勿論 警察官은 時間的 여유가 없어 이런 現實이 惹起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時時刻刻으로 變貌하여 가는 社會現實과 增加一路에 있는 治安需要를 担当하여야 할 警察官은 發展志向的 未來志向的인 眼目에서 能力發展을 기하지 않고는 住民들의 기대에 副應할 수 없고 警察行政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4. 士氣 昂揚

警察官들은 過重한 業務量에 눌려, 또는 制度上의 問題點 때문에 (搜查權獨立 情報調整 統制等) 萎縮될대로 萎縮되어 能動的인 業務處理가 잘 안되고 있다.

따라서 住民들의 눈에는 警察官의 業務處理 狀態가 『意慾的으로』 遂行하는것이 아니라 『마지 못하여』하는 것으로 보일 程度다.

警察官들이 旺盛한 意慾을 가지고 積極的인 態度로 業務를 遂行한다 하여도 제대로 履行하기 힘든데 그렇지 못할때는 住民의 기대에 副應할 수 없는 것은 當然하다 하겠다.

따라서 警察行政의 改善點은 어떻게 하면 警察官의 士氣를 진작시켜 意慾的으로 職務를 遂行시킬 것이냐 하는 問題를 解決하는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第 5 章 結 論

警察官들이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고 社会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身命을 바치고 있으나 國民들로 부터 不信과 敬遠 視당하는 理由가 어디있겠는가?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爲해서 住民들의 警察에 對한 意識構造를 調査分析하고 그 結果를 檢討하므로서 警察行政 改善方向을 提示하고자 優先 濟州道民을 中心으로 分析을 試圖하였다.

濟州島에는 上古時代부터 原住民인 高, 良, 夫 三姓이 살고 있었으나 百濟, 高麗, 李朝時代에 걸쳐 政權이 交替될때 마다 反政府的인 肅清對象인 人事들의 逃避 또는 쫓겨와서 定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官(政府)에 對한 反抗 不信 風潮가 싹트기 시작하였고, 地理적으로 中央政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政府의 惠沢은 볼 수 없고 오히려 官吏들의 苛斂誅求와 歲貢, 賦役때문에 島民의 官에 對한 不信과 怨望은 더욱더 高潮되었다.

더군다나 日帝時 濟州에는 島司가 警察까지 管掌하여 植民地政策을 遂行했기 때문에 濟州島民들은 官은 卽 警察로 생각했고, 搾取와 彈圧은 警察의 主任務로 믿었기에 더욱 警察을 싫어 하였으며 解放直後인 1948年 濟州島民의 $\frac{1}{3}$ 以上이 被害를 입은 4.3 暴動事件의 鎮壓을 도맡은 警察은 오직 事態鎮壓에만 沒頭하였기에 住民들은 警察에 對한 罪意識 때문에 警察을 敬遠視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以上과 같은 狀況이 現在까지 濟州道民의 腦裡에 남아있어 警察官들은 業務處理를 不公正하게 上流層에만 惠沢이 돌아가게 處理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지금까지도 不正한 方法으로 金品을 얻어 쓰며 言語나 態度가 거칠고 不親切하여 親密感을 느낄 수 없다고 보고있다. 이와 같이 濟州道民의 意識속에 警察을 不信하고 敬遠視하는 傾向이 남아 있는한 警察目的 達成은 어려운 難關에 부딪칠 것이기에 이러한 問題點 解決이 警察行政 改善發展에 劃期的인 役割을 할것이다.

警察行政은 住民들의 積極的인 協助없이는 이룩하기 어려운점이 많기 때문에 以上과 같은 狀態下에서는 무엇보다도 對民關係의 改善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警察은 國民全體의 奉仕者라는 意識을 가지고 모든 業務를 公正하고 親切하게 處理하브로서 住民의 呼応과 信賴를 獲得하여야 할것이다.

나아가서 警察官 自身들도 發展志向的인 안목에서 能力發展을 기하여 날로 格증하여가는 治安需要에 適應的이고 能動的으로 對處해 나가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参 考 文 献

1. 申宗淳『行政学概論』 博英社 1974.
2. 『行政学』 考試院 1975.
3. 『行政의 倫理』 博英社 1971.
4. 朴東緒『韓国行政論』 法文社 1974.
5. 朴東緒編『發展行政論』 法文社 1974.
6. 俞 君『行政学 原論』 法文社 1970.
7. 金圭定『新行政学 原論』 法文社 1971.
8. 李桂燮『韓国警察官에 關한 行態学的 研究』 서울大 行政大学
院 碩士論文 1966.
9. 蔡俊錫『韓国警察의 이미지에 關한 研究』 建国大 行政大学院
碩士論文 1973.
10. 徐基榮『警察行政学序說』 韓国行政学会 1970.
11. 金道昶『行政法論』 博英社 1964.
12. 李尚圭『新行政法論』 法文社 1974.
13. 柳興洙『警察法論』 正林社 1971.
14. 崔在東『警察法』 政文出版社 1974.
15. 高永復『社会調査의 方法』 英文社 1975.
16. 金海東『調査方法論 講義』 博英社 1974
17. 内務部『韓国警察史』 1972
18. 『70年代 韓国警察의 方向』 1972

19. 濟州道警察局 『濟州道警察史』 1968.
20. 金泰能『濟州島略史』 濟州年鑑社 1969
21. 夫萬根『光復濟州 30年』 文潮社 1975

S U M M A R Y

A Research on the Jeju Inhabitant's Thinking of the Police

1. Why are the police kept at a respectful distance and distrusted by the inhabitants, in spite of their laying down their life for police affairs to protect inhabitant's lives and property, maintain peace and order in the society?
2. I tried to suggest a reform measure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by finding out a means of settling the above problems as the result of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Way of thinking of the jeju inhabitants concerning the police.
3. The police had meant the whole national action till the middle ages, but in recent times they branched several times, are limited to an action of power to maintain social order only. But to perform the police object, they have to put restriction upon natural freedom of the people, exercise a command, resort to coercive measures, so they have factors to cause the people to have distrust and hostility against the police at any moment.

4. Since ancient times there lived Mr.Koes, Yangs, and bues who were inhabitants in jeju island originally, but whenever, covering the period of Baekje, Ancient Korea, and the Yi Dunasty, those reins of government changed, many persons of sin by doing anti-government movement were condemned to exile into Jeju Island from the mainland. Owing to settling down there, they last to have lack of confidence, hostility against their public officials and government. As Jeju Island is located at a long distance from the mainland and her inhabitants were separat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y were not benefited by their government, so far from being benefited, they should be suffered from extortion, exaction, and compulsory labour, etc. Those factors let the inhabitants keep to complain and discredit the government more and more.

5. moreover, during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owing to the Governor of Jeju Island taking position of police affairs, performing the colonial policy over the inhabitants, they thought the district government to be the police, and believed it main jobs of the police to exploit, suppress the people.

The police that assumed all responsibilities for putting down April 3rd Rebellion in Jeju by which over the

one third of the Islanders were damaged devoted themselves to subdue the miserable plight, thus the inhabitants kept the police at a distance with their delusion of persecution to the police.

6. It remains in their consciousness still now that the police probably do the harm to them, in other words, policemen may do their management of business unfairly, and they may bestow favor on the higher classes only, they think. Added to that, they think policemen may gain cash and other possessions from the people with unfair means, and then the inhabitants do not want to become intimate with policemen because of their being unkind manners, using coarse speaking. If there remains such tendencies, in the thought of Jeju Islanders, to keep the police at a respectful distance, distrust them, that will be a hard nut for the police to crack; therefore it plays an important role for improving, developing the police administration to solve the problems available, I think.

7. It is too hard to perform the police administration without the active assistance of the inhabitants, therefore, I think it necessary first of all to improve the Public Relation with inhabitants without delay in such a situation.

In consequence, the police must deal with all the affairs with kindness and fairly with the conviction as a person of serving for the community, and should gain the trust and concert of the people.

8. Besides, I think the policemen ought to intend to develop their potential ability themselves, and must supply the daily increasing demand of public peace business with desire actively.

경찰에 대한 주민의 의식구조 조사

1976. 10

동국대학 행정대학원

※ 해당번호에 ○표 하십시오.

1. 년 령	2. 학 력	3. 직 업
(1) 20 대 (3) 40 대 (4) 50 대 (2) 30 대 (5) 60 대	(1) 무한 (3) 중 . 고졸 (2) 국졸 (4) 대졸이상	(1) 농 업 (3) 상업 (2) 수산업 (4) 공무원 (회사원)

4. 가장 싫은 경찰관은 어떤 사람 인
니까?

- (1) 수사 형사
- (2) 정보 형사
- (3) 교통 경찰관
- (4) 지파출소 직원
- (5) 보안계 직원
- (6) 기타의 경찰관

5. 가장 좋아하는 경찰관은 어떤 사람
입니까

- (1) 수사 형사
- (2) 정보 형사
- (3) 교통 경찰관
- (4) 지파출소 직원
- (5) 보안계 직원
- (6) 기타의 경찰관

6. 다른 일반공무원과 비교해서 경찰관
의 교양정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1) 대부분이 존경을 받을만 하다
- (2) 대체로 교양이 갖추어 있다
- (3) 보통이다
- (4) 교양이 부족한 편이다
- (5) 교양이 극히 부족하다

7. 만약 새직업을 택하게 된다면 귀하
는 경찰관을 택하시지 않겠습니까

- (1) 기꺼이 경찰관 되는 것을 택하겠다

- (2) 사정에따라 택할 수 도 있다
- (3) 경찰관이 되고 싶지 않다.

8. 경찰관이 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일이 많아 고생만 하니까
- (2) 월급이 적기 때문에
- (3) 죄일을 다루는 일을 하니까
- (4) 다른 직업보다 보람이 없으니까

9.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중에서 가장 중
요한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1) 각종 범죄수사 (범인을 잡는일)
- (2) 해안경비나 간첩을 잡는일
- (3) 교통단속
- (4) 보안사범 단속

10. 경찰관이 처리하는 업무량은 어느정도
라 생각합니까

- (1) 너무 과중하다
- (2) 다소 과중하다
- (3) 보통이다
- (4) 작은편이다 (5) 아주 작다

11. 지파출소에서 쓰는 경비는 어떻게
조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1) 국가에서 주는 돈만으로 충당하다
- (2) 예산만으로는 모자라서 유지로 부터
도움을 받는다
- (3) 경찰대 상업자로 부터 도움을 받는다

- (4) 사전과 관련하여 얻어쓴다
12. 경찰관의 업무 처리상황을 볼때 어떻게 봅니까.
- (1) 매우 의욕적이다
 - (2) 대체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한다
 - (3) 보통이다
 - (4) 마지못하여 하는것 같은 인상이다
13. 경찰관이 하는일은
- (1)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
 - (2) 대체로 믿을만 하다
 - (3) 보통이다
 - (4) 믿을수 없다
14. 경찰관을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과 비교할 때 어떻다고 봅니까
- (1) 부정이 많다
 - (2) 부정이 적다
 - (3) 청렴하다
 - (4) 보통이다
15. 경찰관의 각종사건처리와 단속은 어떻다고 봅니까
- (1)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생각한다.
 - (2) 대부분 공정하나 가끔 정실에 흘러 불공정하게 처리하는것 같다.
 - (3) 공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와 불공정하게처리하는 경우가 반반 정도이다
 - (4) 대부분 정실에 흘러 불공정하게 처리 한다.
16. 물건을 잃어 버렸던지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때는 경찰관에 신고합니까
- (1) 경찰관서에 꼭 신고한다
 - (2) 신고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다
 - (3) 신고하지 않는다
17.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1) 신고해 봤자 피해복구가 될 것 같이 않아서

- (2) 신고하면 오라가라 귀찮게해서
 - (3) 보복이 두려워서
18. 사람들이 경찰서에 출입하는것을 꺼려하는 이유가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경찰관들이 찾아간 손님을 죄인시 하니까
 - (2) 경찰관이 불친절하니까
 - (3) 다른사람이 무슨죄를 짓고 청탁하려 간것으로 보니까
19. 사람들의 경찰관을 싫어하고 경원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까
- (1) 남의 잘못하는것만 취급하니까
 - (2) 죄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3) 언어나 태도가 거칠고 불친절 하기 때문에
 - (4) 경찰관이 업무처리는 공정히 하지않고 차별대우를 하기때문에
20. 경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 (1) 민폐를 없애고 부조리를 제거하여야 한다.
 - (2) 법을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3) 각종 범죄를 신속하고 시원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4) 국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 (5) 경찰관이 교양을 높여야한다.
 - (6) 기 타
21. 경찰관은 대체로 어떻다고봅니까
- (1) 친절하다
 - (2) 불친절하다
 - (3) 보통이다
 - (4) 무섭다
22. 사람들이 경찰관서에 불일이 있어서 찾아 갔을때 어떤느낌을 받는다고 봅니까

- (1) 매우 친절하여 기분이 나쁘다
- (2) 만족할수는 없으나 좀 나아졌다
- (3) 보통이다
- (4) 불친절하여 기분이 나쁘다

23. 경찰관이 쓰는 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 (1) 곱고 부드러워 듣기 좋다
- (2) 보통때는 고운말씨를 쓰다가도 공무를 수행할때는 거친말을 많이 쓴다
- (3) 말씨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 (4) 너무 거칠고 격하여 불쾌감을 준다

24. 경찰관의 용모나 복장및 태도는 어떻다고 느꼈습니까

- (1) 용모와 복장이 의정하고 멋있어 보인다
- (2) 보통이다
- (3) 대부분 용모 복장이 단정치 못하다
- (4) 별로 관심이 없다

25. 경찰관서 앞을 지나 갈때나 경찰관을 만났을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 (1) 괜히 겁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 (2) 부르지나 않나 신경이 쓰인다

- (3) 별다른 느낌이 없다
- (4) 오히려 안심이 된다

26. 경찰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봅니까

- (1) 상류층에 있는 사람
- (2) 일반 시민
- (3)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
- (4)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

27. 귀하는 경찰이 있는 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 (1) 적극 협조하고 있다
- (2) 경우에 따라서 협조한다
- (3) 마지못하여 협조한다.
- (4) 협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28. 경찰관이 시키는일에 대하여 국민은

- 어떤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까
- (1) 무조건 따라야 한다
- (2) 경우에 따라서 따라야 한다
- (3) 따를 필요가 없다

조 사 자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